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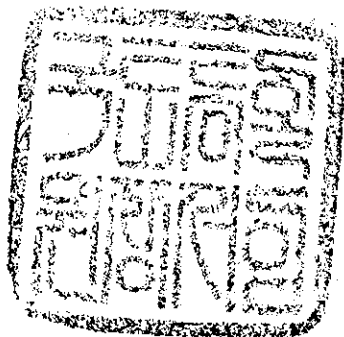
韓半島平和定着을 위한 安全保障形態

1975. 7.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7.



研究機關：平和統一研究所
研究責任者：李 正 滿



目 次

1 . 序 論	3
2 . 安全保障의 類型	7
가 . 個別的 安全保障	7
나 . 中立的 安全保障	8
다 . 集團的 安全保障	10
3 . 安全保障의 實際	15
가 . 個別的 安全保障의 實効와 限界	15
나 . 中立的 安全保障의 特殊性과 不確實性	18
다 . 集團的 安全保障의 理想과 現實	25
라 . 小 結 論	35
4 . 韓半島와 4 大國 政策	37
가 .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37
나 .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45
다 .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	51
라 .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55
마 . 4 大國 政策과 平和定着	59
5 . 韓國 安全保障의 모델 및 評價	63
가 . 모델 設定 및 評價의 前提	63
나 . 個別的 安全保障에 依한 모델 및 評價	64
다 . 中立的 安全保障에 依한 모델 및 評價	71

라. 集團的 安全保障에 依한 모델 및 評價	78
6. 結 論	87

1. 序 論

現 時点에서 우리 韓國이 当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課題가 있다면 그것은 平和 定着과 安全保障의 問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安全保障이란 個人의 生存 問題로부터 國家의 存立 問題, 나아가서는 人類의 平和 問題와도 關聯이 되는 莫重한 意義와 內容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平和定着은 緊張 緩和로부터 統一에 이르기까지 民族的 念願이 담겨져 있는 切實한 課題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韓國이 当面하고 있는 重要한 두개의 課題는 分斷國이란 特殊狀況에서 볼 때에 相互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어 不可分の 것이다.

왜냐하면 分斷國의 安全保障이란 民族安保가 아닌 体制安保에 치우치는 屬性이 있어, 서로 否認하고 吸收하고자 하는 傾向이 強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두 개의 問題를 따로따로 떼어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問題로 連結하여 다루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며 効果的일 것이다.

그러므로 平和定着과 安全保障의 問題를 連結하여 풀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目的이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이란 最終 形態로서는 平和統一이 이루어지고 그 統一된 狀態가 安定性을 가지는 것을 意味하지만, 여기

에서 다루고자 하는 平和定着이란 統一의 前 段階로서 戰爭이 抑制되고 緊張이 緩和되어 平和・統一 志向的으로 되어 가는 狀況을 意味한다.

이와 같이 戰爭이 抑制되고 緊張이 緩和되어, 平和・統一 志向的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統一이 이루어 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狀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信賴할 수 있고 確固한, 그리고 平和 志向的인 安全保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安全保障이란 果然 없을 것인가, 있다면 어떠한 形態가 될 것인가를 다루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平和定着을 위한 安全保障의 形態를 導出하기 위하여 먼저 安全保障의 一般論을 歴史的・經驗的 方法으로 다루고자 한다.

一般論 중에서도 形態를 重点的으로 다룬다.

即 安全保障의 類型에서 各 形態를 類型別로 그 構造를 검토하고, 그 다음 安全保障의 實際에서 各 形態가 갖는 實効성과 特性을 검토 한다.

그 다음, 韓半島의 環境的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周邊 4大 國의 政策을 韓半島와 關聯하여 檢討한다.

그리하여 一般論에서 다룬 安全保障의 類型에 비추어 韓國 安全保障의 모델을 設定하고, 이 모델을 4大國 政策과 關聯시키고 또한 一般論에서 다룬 安全保障의 實際 即 各 形態別의 實効성과

特性에 비추어 評價한다.

結論的으로 韓國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安全을 確固히 保障할 수 있는 安全保障의 形態는 果然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導出해 내고자 한다.

本 研究에서는 安全保障의 本質적인 問題 即 安全保障의 目標, 手段, 威脅 같은 問題는 일단 除外한다.

그리고 安全保障이란 國際關係를 前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는 安全保障의 形態도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形態가 될 것이며, 따라서 安全保障을 위한 國內 體制 問題 같은 것도 除外한다.

또한 여기에서 다루는 平和定着도 統一되기 까지의 前 段階로서의 平和定着이기 때문에 統一된 뒤의 安全保障 問題도 다음 後統 課題로 넘긴다.

마지막으로 安全保障이란 絶對적인 것은 없고 相對적인 것이란 前提下에 結論을 보아야 할 것이란 것도 아울러 밝혀 둔다.



2. 安全保障의 類型

가. 個別的 安全保障

國家가 成立함으로써 外部의 侵略을 防止하고 國家의 安全을 維持하기 위한 必要性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外部로부터 侵略을 防止하고,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하여 먼저 自体内的 實力을 培養하게 된다.

即 軍隊를 養成하고 軍備를 強化하고 食糧을 備蓄하고 物資를 生産하며 士氣를 높이고 統治組織을 強化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個國이 單獨으로 軍備 등 國力을 擴張·強化함으로써 外部로부터의 侵略에 對抗하고 排除하는 가장 原始的이고 古典的이며 同時에 가장 基本的인 安全保障의 形態라 할 수 있다.

또 單獨의 國力으로는 不安을 느껴 利益을 同一히 하는 2個國 또는 3個國이 防衛同盟을 締結하여, 서로 援助하고 補完하면서 外部로부터의 侵略에 對処하는 경우도 包含된다.

第1次 世界大戰 前의 3國同盟과 3國協商이 그 例이며, 現在 多數 存在하고 있는 相互安全保障條約도 國際聯合 憲章 第51條 또는 第52條를 援用하고 있는 점과 相互 協力이라는 內容이 軍事뿐 아니라 經濟·社會·技術·文化 등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舊 軍事同盟 形態와 多少 相異한 性質을 가지고 있으나 그 當事國의 數가 極히 限定되어 있다는 점에서 地域的 集團安全保障과 區別하

는 것이 妥當하다 할 것이다.¹⁾

現在 存在하고 있는 個別的 安全保障의 事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韓美相互防衛條約 (1955)
- (2) 美日安全保障條約 (1960)
- (3) 美中相互防衛條約 (1955)
- (4) 蘇北傀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961)

나 . 中立의 安全保障

中立의 安全保障이란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中立이란 用語가, 本來 戰爭이 發生하였을 때에 交戰國의 어느 편에도 加担하지 않고 또한 交戰國 중 어느 한 편을 援助하는 일이 없는 超然한 狀態를 意味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²⁾, 對立關係에 있는 어떤 陣營이나 國家와는 實質적으로 軍事同盟 關係를 가지지 아니하고 超然한 中立의 地位를 維持함으로써 스스로의 安全을 保障하고자 하는 形態이다. 이 中立의 安全保障은 永世中立에 依한 安全保障과 中立路線에 依한 安全保障으로 分類할 수 있다.

1) 日本安全保障編集委員會, 安全保障體制論. (東京; 原書房, 1968), p.30.

2) 中村菊男, 國際政治讀本, (東京; 野田經濟社, 1965), p.83

(1) 永世中立에 의한 安全保障

永世中立이란 어떠한 國家가 戰略적으로 重要な 位置에 있음과 同時に 單獨으로는 安全을 保障할 수 없는 경우에 主權의 有 關 國家들이 條約을 締結하여 이 國家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侵略을 막아 주고, 이 國家에 대하여는 다른 國家間的 어떠한 戰爭에도 中立을 지키고 自發적으로는 어떠한 國家에 대하여도 戰爭을 敢行하지 않을 義務를 負擔함으로써 그 安全을 保障함과 同時に 周邊 有 關 國家의 勢力均衡을 維持하려는 것이다.³⁾

이 永世中立은 現在 完全한 形態로서 스위스의 경우가 있고, 不完全한 形態로서 오오스트리아의 경우가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스위스의 中立이 一般적으로 유럽 全體의 利害와 有 關하다는 意見이 強하게 抬頭되어 利害關係를 가진 列強에 依하여 國際條約上으로 中立이 保障되어 있는 것이며, 오오스트리아의 경우는 關係 各國의 保障이 없이 憲法上으로, 어떠한 國家와도 軍事同盟을 맺지 않고 또 어떠한 國家에 對하여도 軍事基地를 貸與하지 않는다고 宣言하여, 그것을 關係 各國에 通告하고 承認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關係 各國은 消極적으로 오오스트리아의 永世中立 狀態를 認定함에 不過하며, 積極적으로 永世中立이 破壞될 경우에 어떠한

3) 日本安全保障編集委員會, 前掲書, p.31

한 措置를 취할 것인지에 對하여는 保證이 없다.⁴⁾

(2) 中立路線에 依한 安全保障

中立路線에 依한 安全保障은 永世中立의 경우처럼 國際法上의 地位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自主적으로 中立主義 政策에 依하여 다른 어떤 國家와도 軍事同盟을 맺지 아니하고 또 戰爭이 發生하였을 경우에는 自國이 侵略을 당하지 아니하는 限 어느 편에도 加担하지 않고 第三者의 位置를 지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中立主義 또는 非同盟主義를 지킴으로써 如何한 國家와도 敵對關係를 맺지 아니하고 따라서 被侵의 契機를 만들지 아니함으로써 自國의 安全을 保障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웨덴이 그 代表的인 경우이다.

다. 集團的 安全保障

集團安全保障은 國家가 集團을 形成하여 여기에 屬하는 國家의 安全保障을 集團的 立場에서 共同의 努力으로 安全을 確保하고자 하는 形態로서 多邊的 條約의 한 當事國이 他當事國을 攻擊하였을 경우에 다른 모든 當事國이 被侵國家를 도와 侵略國家에 對하여 共同으로 裁制措置를 取하여 平和를 回復하고자 하는

4) 中村菊男, 前掲書, p.865f.

것이다.⁵⁾

바꾸어 말하면, 第一次 世界大戰 以前까지 주로 使用하였던 勢力 均衡의 原理 即 國家對國家, 國家群對國家群의 힘의 均衡을 維持함으로써 安全을 確保하고자 하는 方式을 否認하고, 對立關係에 있는 國家도 包含한 國家의 集團的 立場에서 關係 諸國家가 不可侵을 約束하고 여기에 違反하여 平和를 破壞하는 國家에 對하여 다른 모든 國家가 共同으로 強力措置를 發動하여 平和를 回復하고자 하는 安全保障의 形態이며 20世紀의 產物이라 할 수 있다.⁶⁾ 이 形態는 一般的 集團安全保障과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으로 分類할 수 있다.

(1) 一般的 集團安全保障

一般的 集團安全保障은 關係 諸國의 範圍가 世界的 規模에 이르는 경우로서 그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諸國家가 協力하여 힘을 集結한 경우, 그 겨냥하는 方向이 關係 諸國의 内部에 對하여 集中的이며 特定한 假想 敵國을 豫想하지 않는다. 둘째, 關係 諸國家의 協力關係가 交互의이고 綜合的 이다. 即 關係 諸國이 不可侵을 約束하고 戰爭을 不法化할 뿐 아니라, 軍事·政治·經濟·技術·文化 등의 諸分野에 걸쳐서 協力하

5) 田中直吉, 『集團安全保障の類型』, 『集團安全保障』(東京; 日本外政学会, 1957), p.4

6) 日本安全保障編集委員會, 『前掲書』, p.3

고 緊密化를 期함과 함께 軍備·縮少·紛争의 平和的 處理 등의 諸手段에 依하여 戰爭의 原因을 包括적으로 消滅시키려 努力하는 점에서 特히 그러하다. 세계, 關係 諸國의 範圍가 世界的이며 安全保障의 對象을 少數國家에 限定하지 않고 널리 國際社會 全體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이 一般的 集團安全保障의 原型은 國際聯盟이고 現在는 國際聯合으로 發展하여 있다.

(2) 地域的 集團安全保障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이란 局地的인 集團安全保障이다. 國際紛争은 地域的인 것이 많으며 또 地域的인 것은 地域적으로 解決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國際聯合 憲章에서도 地域的 安全保障을 認定하고 있다.

더우기 國際聯合 憲章에 依한 安全保障이 5大國의 提携를 前提要件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國家의 提携가 이루어지지 않고 拒否權의 行使가 濫用되는 등 國際聯合의 普遍主義에 依한 世界協調의 原理는 不安定性을 드러내어 各國家는 一般的 集團安全保障 外에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을 생각하게 되고 國際聯合 憲章도 이것을 豫想하고 例外規定으로서 第51條에 個別的 및 集團的 自衛權, 第53條 後段의 旧敵國條項 등을 規定하고 있다.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은 一定 地域內의 侵略을 排除함으로써 그 地域內의 平和를 達成하려는 集中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과 一定 地域 밖으로부터의 侵略者에 對抗하는 集團防衛型 地域的 集團安

全保障으로 나눌 수 있다.⁷⁾ 또 이것을 完全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과 不完全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으로 表現하는 경우도 있다.⁸⁾

이 集中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의 事例는 第一次 世界大戰 前의 로카르노 條約機構를 代表的으로 들 수가 있으며, 集團防衛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으로는 西歐聯合 (WEU) · 北大西洋條約機構 (NATO) · 中央條約機構 (CENTO) · 東南亞細亞條約機構 (SEATO) · 안즈스 (ANZUS) 등이 있다.

7) 日本安全保障編集委員會, 安全保障體制論 (東京; 原書房, 1968), p.22.

8) 田中直吉, 前掲書, p.8.



3 . 安全保障의 實際

前章에서는 安全保障의 諸形態를 類型別로 나누어 그 構造를 檢討하였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各形態의 安全保障이 갖는 實際的인 效効性を 歴史的 事實과 關聯하여 檢討하고자 한다.

가 . 個別的 安全保障의 實効와 限界

個別的 安全保障은 古代 部族國家 時代로부터 있어 왔던 安全保障의 原初的인 形態이다. 國家와 國家 간의 利害關係를 中心으로 한 對立과 싸움은 힘을 手段으로 한 勝負였다. 따라서 힘이 弱할 때에는 보다 強한 힘의 衝擊을 받았을 경우에는 쓰러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各國家는 힘을 기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利害關係를 同一하는 友邦을 찾아 서로 도와 나가는 同盟關係를 맺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 個別的 安全保障의 發生根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가 스스로 國力을 기르고 또는 國家利益에 有利한 國家와 同盟을 締結한다는 것은 自國의 安全保障을 위해 至極히 當然하며 最少限의 基本條件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論理에 立脚한 軍事力의 強化 등은 서로 힘의 優位를 차지하기 위한 努力의 結果, 各 國家間에는 軍備競爭의 惡循環을 낳아 安全保障이란 手段에서 본다면 一種의 自己矛盾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即 1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한 軍備擴張은 相互 不信과 恐怖
그리고 不安을 招來하여 結果的으로는 對決主義에 依한 새로운
戰爭 原因을 낳게 되고 特定 國家間의 對立은 同盟體制間의 對
立으로 發展되고 따라서 國際社會에 있어서 一般的인 安全保障이
위태롭게 되는 逆機能 現象이 일어나는 것이다.

第一次 世界大戰은 仏蘭西와 獨逸 간의 傳統的 對立, 獨逸의
軍備 增強에 對한 英國의 새로운 恐怖 또 露西亞의 膨脹主義에
對한 오오스트리아와 獨逸의 不安 등 各 國家間의 相互 不信과
軍事對立¹⁾ 그리고 3 國同盟과 3 國協商 간의 同盟體制的 對立²⁾
으로 國際緊張이 頂點에 達한 結果로서 이른바 처음부터 始作된
戰爭이었다. 또한 第二次 世界大戰도 海軍 軍縮條約의 破棄³⁾
나 國際聯盟으로부터의 脫退⁴⁾ 등 軍備擴張을 抑制하는 手段에
失敗함으로써 武力에 依한 對決 即 軍備擴張 등을 中心으로 한
힘의 對決에서 비롯했음은 明白한 일이다.

이와 같은 軍備擴張 등에 依한 對決은 戰爭의 危險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軍事に 投入되는 國家 資源의 比重을 점점 높인다
고 하는 國內的 問題를 同時에 지니고 있다.

1) 田中直吉, 近代國際政治史, (東京; 有信堂, 1955), pp.161f.

2) 上掲書, pp.204f.

3) 岡義武, 國際政治史, (東京; 岩波書店, 1963), pp.267, 291.

4) 上掲書, pp.290f.

이러한 경우, 廣義의 安全保障의 目標인 國民의 生活水準⁵⁾을 犠牲시키면서까지 軍備擴張을 追求하게 되는 結果가 된다. 그러므로 軍備를 中心으로 한 個別的 安全保障은 이런 意味에서 限界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國의 軍備에 限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國際均衡을 維持함으로써 安全保障을 企圖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두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即 한 가지 方法은 相對便의 힘을 分散시켜 相對적으로 弱화시키는 方法이 있겠고 例하면 仏蘭西가 第一次 世界大戰까지 傳統的으로 追求해 온 方式으로 푸로시아와 오오스트리아를 分離하는 方法이다.

또 한가지 方法은 利害關係를 同一히 하는 國家間에 同盟關係를 맺어 自己便의 힘을 增大시키는 것이다. 이 方法 亦是 古來로 있어 왔던 것으로 나폴레옹戰爭後 유럽의 離合集散, 各種 形態의 同盟⁶⁾ 第一次 世界大戰 前의 3國同盟과 3國間商, 第二次 世界大戰 前의 3國同盟과 聯合國 간의 對立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第二次 世界大戰 後의 同盟 形態는 國際聯合 憲章에 따른

5) Daniel Lerner, "Security", A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 ed, Julius Gould William L. Kolb: (New York; The Free Press Co. 1964), p.626f.

6) 上揭書, pp.61 ~ 72.

것으로 7) 軍事뿐 아니라 經濟 등 非軍事的 側面을 가지고 있는
點에서 多少 內容이 相異하지만 그 本質에 있어서는 對抗的
同盟 形態로, 그 有効性에 있어서는 差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同盟 形態에 依한 個別的 安全保障 亦是 그 實効性에
있어서 相對的인 것으로 勢力均衡下의 短期的인 効用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長期的 觀點에서 볼 때 그 有効性은 不安定하
다고 할 수 있다.

나. 中立的 安全保障의 特殊性과 不確實性

中立的 安全保障의 形態는 古代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 없고
16世紀에 들어와서 商業資本主義와 絶對主義 國家權力과의 提携
에 依한 重商主義 時代가 展開되어 國際貿易이 飛躍적으로 發展
하여 商人間의 中立關係로부터 國家間의 中立關係로 發展하기 始
作하였다. 8)

이 경우에 있어서도 中立의 實際的 保障은 어려웠다. 그 實
例로서 1562년에 스웨덴은 露西亞와의 戰爭에 있어서 一切의

7) 國際聯合 憲章 第51條, 52條, 53條에 依한 地域的 集團
安全保障과 同盟體制는 그 參與國家의 數로써 区分함이 合
理的인 것이다. 2個國體制는 同盟體制로, 多數集團體制는
集團體制로 봄이 妥當하다.

8) 石木泰雄, 中立制度의 史的研究 (東京; 有斐閣, 1950), p.67.

露西亞 港口와의 通商 禁止를 宣言하고 있었으며 特히 韓子(獨逸) 商人이 露西亞와 去來하는 것을 엄격히 禁止하고 英國·덴마크·스페인·스콧트랜드의 船舶에 對하여는 單只 通商을 中止하도록 勸告 하였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이들의 船舶도 捕獲하였던 것이다.⁹⁾

19世紀에 물어와서는 1780年의 第一次 武装中立의 宣言, 1800年의 第二次 武装中立의 宣言으로 中立制度의 成立 過程에서 重要한 契機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中立的 安全保障과는 그 内容이 다른 것이며 또한 그 곳에도 問題點이 있었다.

即 第一次 武装中立은 1783年 美13州가 獨立戰爭을 시작하였을 때에 仏蘭西와 스페인이 美國側에 加担하여 美國의 獨立戰爭은 英國對 美國·仏蘭西·스페인 聯合軍 간의 國際 戰爭이 되었다.

여기에 加担하지 않은 유럽의 中立的 立場에 있던 모든 國家가 露西亞의 先唱으로 武装中立同盟을 맺었던 것이며 그 内容의 中心點은 中立 自由商業과 戰爭物資 禁輸措置였는데 이것은 英國에 不利한 것으로 結果적으로 英國에 壓力을 加하는 措置가 되었다.¹⁰⁾

그러므로 이것은 中立的 安全保障의 概念과는 상이한 것으로 消極的이긴 하나 利害關係를 같이하는 國家間的 하나의 巨大한 同盟 体制的인 性格을 가졌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 上揭書, pp.67f.

10) 上揭書, pp.101f.

그리고 第二次 武装中立 宣言은 나폴레옹戰爭에 있어서 유럽大
同盟으로부터 露西亜가 仏蘭西에 接近하는 方向으로 中立의 地位
에 섰다. 그리하여 다시금 露西亜를 中心으로 덴마크·스웨덴
등이 条約을 맺어 第二의 武装中立을 宣言한 것으로 그 内容은
第一次 武装中立과 거의 同一한 性格을 가지는 것이나 禁輸措置
에 있어서 中立宣言国 以外の 國家에 對하여 強制檢問을 못하도
록 하는 것이 特異하였다.

이에 對하여 英國은 自國에 對한 敵對行爲로 看做하고 實力行
使로 덴마크·스웨덴 船舶을 抑留하고 코펜하겐港 밖에서 덴마크
艦隊를 擊破시켰다. 이에 덴마크가 무릎을 꿇었고 露西亜도 새
皇帝에 依하여 政策이 바뀌짐으로 말미암아 第二次 武装中立이
廢棄되었던 것이다.¹¹⁾ 여기에서는 中立이란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다.

또 1793年의 英國과 仏蘭西 間의 戰爭時 美國은 워싱턴 大
統領의 有名한 中立宣言으로 中立을 지켰으나 結局 英國에 依하
여 商船이 나포되기 시작하여 美國 大統領 메디슨은 對英 鬭爭
宣言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¹²⁾ 여기에서도 中立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뒤 中立制度를 尊重하는 1906年 헤그宣言¹³⁾, 1909年 海

11) 上揭書, p.104

12) 上揭書, p.105 ~ 107.

13) 上揭書, p.133

上中立을 界体化하는 런던宣言¹⁴⁾ 등에서 中立制度의 確立이 뚜렷이
내다보이는 것 같았으나 本格的인 帝國主義 時代로 들어서면서부터
또다시 重要되기 시작하였다.

即, 1914年에 開始되었던 第一次 世界大戰에 있어서 弱少 中立
諸國은 交戰列強에 依하여 여지없이 짓밟혔다.

룩셈부르크는 1867年 런던條約에 依하여, 土耳其는 1831年과
1839年의 런던條約에 依하여 永世中立化되어 있었으나 條約當事國
인 獨逸은 1914年 8月 1日 룩셈부르크를, 8月 20日 벨기에를 侵
入하였던 것이다.

또한 永世中立國은 獨逸뿐만 아니라 仏蘭西 및 英國에 依하여서
도 侵入當하였다. 即 1915年 10月 英國 및 仏蘭西는 希臘을
侵入하였고 더우기 英國과 仏蘭西는 希臘의 內政에까지 干涉하였던
것이다.¹⁵⁾

1915年, 日本은 中國 內의 獨逸 租借地를 攻擊하기 위하여 中
國 領土로 侵入하였다.

스웨덴·덴마크·노웨이·스위스 등도 直接 領土 侵入은 받지
않았으나 交戰國의 海上封鎖로 因하여 船舶 擱沈 등 莫大한 損失
을 當하였다.¹⁶⁾

14) 上揭書, p. 133.

15) 上揭書, pp. 155f.

16) 上揭書, pp. 106f.

유럽의 中立國들의 中立 維持에 對한 協調에 冷淡하던 美國도 獨逸 潛水艦의 無差別 攻擊에 自國 船舶이 擊沈됨으로써 大戰에 參加하게 되었다.

第二次 世界大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數는 第一次 世界大戰時에 比하여 훨씬 줄어들었고 거의 大部分의 國家가 戰爭當事國이 되었다. 그것도 스위스를 包含한 모든 中立 國家가 交戰國에 依한 禁輸品の 規制 등으로 經濟的 側面에서 많은 制約을 받았으며, 國家主權에 對하여서도 많은 壓力을 받았던 것이다.¹⁷⁾

이들 中에서도 典型的으로 侵害를 당한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아 中立의 確保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即 노르웨이는 이미 1938年 5月에 國際聯盟의 決議에 依한 것 以外의 모든 種類의 戰爭에 있어서 中立을 지키는 것을 議會에서 決議하고 1939年 8月에도 國王은 中立을 闡明하고 第二次 世界大戰이 시작되자 스칸디나비아諸國과 함께 中立을 宣言하였다.

노르웨이는 獨逸에 對하여 魚油, 輕油 등을 輸出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鐵鉸이 冬期에는 陸路로 노르웨이의 나루비구港에 운반되어 그곳으로부터 船積되어 노르웨이領海를 航海하여 獨逸에 到着하고 있었으므로 獨逸 海軍의 劣勢를 생각할 때 노르웨이의 中立은 오히려 獨逸에 有利했다.

그리하여 英國은 1939年 12月에 노르웨이에 對하여 對獨 輸送

17) 上揭書, pp.204f.

中止를 要求하였고, 獨逸의 노르웨이 領海 利用을 防止할 수 없으면 英國 海軍으로 防止하겠음을 通告하였다. 獨逸로서는 英國이 노르웨이에 侵入하는 것이 確實하면 先手를 써서 먼저 侵入할 必要를 느껴 1940年 4月에 侵攻을 시작하였다.

한편, 英國도 노르웨이에의 侵攻計劃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¹⁸⁾

이리하여 第二次 世界大戰을 契機로 中立의 概念이 實際에 있어서 非中立國家에 依하여 그 中立의 地位가 保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¹⁹⁾

그 典型的인 例가 스웨덴과 스위스의 경우라 하겠다. 이 以外의 유럽의 大部分의 傳統的인 中立國家들은 北大西洋條約機構 또는 와르샤와 協定에 加担함으로써 集團防衛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 속에 自身の 安全을 保障하고자 하고 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어느 편의 軍事同盟의 體制에 屬하지 않고 最大限의 軍事力을 가지고 獨立을 지키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小國으로서는 堪當하기 힘들 程度로 莫大한 軍費를 負擔하여 戰時에 對備한 軍事體制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國民 1人當 負擔額에 있어서는 美國·蘇聯·이스라엘에 다음 가는 世界 第4位라고 한다.²⁰⁾

18) 上揭書, pp.267f.

19) HNK 海外取材班, 世界と安保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0) pp. 191f.

20) 上揭書, pp. 195f.

스위스의 경우는 永世中立國家로서 그 中立의 地位가 保有되어
은 唯一한 境遇이다. 이것은 그 地理的 條件이 유럽의 戰略的
十字路로서의 重要 位置를 占하고 그 周圍는 유럽의 列強에 依
하여 둘러싸이고 있다. 單只 알프스山系가 自然的 要塞가 되어
있다. 또한 人口 600萬의 構成比를 그 母國語系로 나누어 보
면 獨逸系가 74.6%, 仏蘭西系가 20.6%, 이태리系가 4.2%,
其他 1.3%로 되어 있음은 21) 永世中立을 이룩해 나갈 必然的
條件이 되고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特殊 條件下에서도 스위스는
中立을 지키기 위하여 國民皆兵主義에 依한 철저한 國防態勢를
갖추고 있다.

第二次 世界大戰 中 나치스 獨逸의 危脅에 對処하기 위하여
스위스는 國家非常事態 宣言을 發表하고 48時間 사이에 50萬의
國防軍을 動員하여 그 危脅에 對処하였으며, 히틀러에 對하여는
만약 獨逸이 스위스를 侵入한다면 모든 幹線道路와 重要 터널을
暴破하고 自暴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決意를 다짐하여 주었던 것
이다.²²⁾

以上에서 보아 을 때, 中立的 安全保障은 스위스처럼 特殊 條
件 下에 어느 程度 期待해 볼 만하다 할 것이나 一般的으로
보아 至極히 不確實한 것이라 하겠다.

21) 上揭書, pp. 221f.

22) 上揭書, pp. 222 ~ 223

다. 集團의 安全保障의 理想과 現實

集團安全保障은 第一次 世界大戰 後 國際聯盟에 依하여 처음으로 制度化된 것이나 制度 그 自体로 보면 戰前까지 一般적으로 使用되었던 勢力均衡을 否認하고 登場한 安全保障의 方式으로 合理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勢力均衡은 國家間의 對立을 그대로 前提하고 國家間의 힘의 均衡을 잡음으로써 安全을 保障하려고 하는 方式이지만, 均衡 그 自体를 國際的 規模에 있어서 調整하는 機構가 없는 限 언제나 自己崩壞의 危險을 갖는다. 그러므로 極히 不安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國家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要素 卽 武器의 多少만이 아니고 作戰·指揮能力·兵士의 士氣·地理·自然資源·生産能力·民度·政府의 質·外交의 質·人口·科學技術²³⁾ 등 複合적으로 構成되고 있는 国力으로서 그 判定은 반드시 容易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國家間의 힘의 均衡을 잡는다 하더라도 相對國家의 힘의 增強 卽 軍備擴張 등 同盟의 強化 등을 計劃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며 힘의 均衡을 目標로 한 均衡政策 그 自体가 오히려 均衡을 破壞하고 對立을 激化시킨다고 하는 危險한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23) H.J.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Knops, 1966), pp.107ff.

第一次 世界大戰의 原因이 된 3國同盟과 3國協商의 對立은 그러한 勢力均衡方式의 危險한 面을 가장 露骨的으로 나타낸 것임은 이미 보아 온 바이다.

集團安全保障은 對立關係에 있는 國家를 包含한 關係國家 모두가 相互不可侵을 約束하고 共同 協力努力으로 侵略을 防止 또는 抑制하고 平和를 維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間의 對立을 于先 解消하는 効果가 있고 勢力均衡 方式과 같이 制度 그 自体에 오히려 對立을 激化한다고 하는 危險한 要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集團의 힘으로 平和를 維持한다고 하는 것은 國際社會 全體의 立場으로부터 平和維持가 問題될 경우 當然히 要求되는 方式이며 그 意味하는 集團安全保障은 安全保障의 方式으로서 極히 合理的인 形態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集團安全保障은 勢力均衡에 比하여 보다 合理的인 安全保障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方式도 現實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權力政治를 完全히 止揚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現實的인 機能面에 여러 가지 問題가 存在해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먼저 安全保障 措置의 發動方式에 關한 것으로서 集團安全保障이라고 할지라도 集團 그 自体의 立場을 基礎로 하여 發動하는 것은 實際 極히 어려운 것이다.

國際社會의 權力政治로부터 制約을 避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때문에 반드시 必要한 경우에 언제나 그것이 發動된다고 하는

것은 期待할 수 없다. 最近의 印支事態에 있어서나 中東事態, 그리고 1971年末의 印度 파키스탄 戰爭에 있어서 切實히 느끼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國際聯盟에서 集團安全保障으로 強制措置가 發動된 것은 1935年 이태리·이디오피아戰爭 때이지만 그러나 그 以前에도 強制措置가 發動되었어야 할 事件들이 있었으나 그 發動은 拒否되었던 것이다.

即 1923年 이태리가 希臘의 哥倫 섬을 占領했을 때, 1931年 日本이 滿洲를 侵入했을 때, 1937年 中國을 侵入했을 때, 1933年에서 1935年까지의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간의 차코전쟁 (Chaco war)²⁴⁾ (이 경우에는 武力禁止를 勸告하긴 했으나)의 경우 등이다.

그 理由는 勿論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要컨대 當時 國際聯盟의 中心이 되어 왔던 英國이나 仏蘭西가 強制措置의 發動에 随伴할 自國의 利害關係에의 不利益을 두려워하고 또는 그들이 利害關係를 가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發動을 必要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反하여 이태리·이디오피아戰爭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強制措置가 發動된 것은 指導的 立場에 있던 英國이나 仏蘭西가 地中海에 있어서 이태리의 勢力이 增大하는 것을 警戒한 것에 커다란

24) ibid. pp. 452f.

理由가 있다. 또 強制措置에 있어서도 이태리 商品 보이콧을 주
주로 하는 經濟裁制였고 스에즈運河를 封鎖하면 이태리의 軍事行
動을 阻止하는 것이 容易하였지만 이러한 措置를 취하면 그 화
살이 自國에 直接 겨냥될 것을 두려워하여 끝내 이태리와 이디
오피아 간의 戰爭을 보아넘겨 버렸던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國際聯盟의 經驗을 보더라도 반드시 集團 그 自體
의 立場을 基礎로 하여 發動되는 것이 아니고 國家間的 權力政
治에 依하여 影響을 받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
다.

이와 같은 일들은 國際聯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國際聯
合에서 強制措置가 發動된 것은 韓國動亂 때이지만 이 境遇에는
이태리·이디오피아戰爭의 경우와는 달리 國際聯合으로서는 처음으
로 武力에 依하여 強制措置가 發動되었다. 그러나 그 以前에도
國際聯合에 依한 強制措置가 있어야 했을 경우도 있었다.

1948年5月15日, 이스라엘이 獨立을 宣言함에 있어 아랍諸國
即 이집트·요르단·이락·시리아·레바논의 軍隊가 일제히 攻擊을
加하였을 때 平和에 對한 威脅 및 平和의 破壞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憲章에 따라 強制措置가 當然히 發動되었어
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休戰 仲裁에 그쳤던 것이다.²⁶⁾

25) ibid, p.403

26) Peter Calcoressi,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1945. (New York; Freelecker A prager, 1968), pp.25f.

이에 反하여 韓國動亂의 경우에는 北傀의 南侵이 시작된 即時로 強制措置의 發動이 問題가 되고 곧 實現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韓國動亂의 경우에만 強制措置가 취하여 졌을까. 이는 前者의 경우와는 달리 共產勢力的 擴大를 막아야 하겠다는 美國을 中心으로 한 自由世界的 切實한 課題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1956年의 匈牙利·폴란드 事態가 惹起되었을 때도 소련의 拒否權行使로 安全保障理事會는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겨우 總會에서 蘇聯軍의 撤収 勸告 決議 程度로 그치고 實際로는 아무런 強制措置도 못하고 難民救濟品 輸送 程度에 그쳤던 것이다.

이는 美國과 雙壁을 이루는 超強大國인 蘇聯과의 大戰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集團安全保障이라고 하더라도 現實의 權力政治의 影響을 전혀 無視할 수 없으며 平和의 破壞나 危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바로 安全保障措置가 發動한다고 하는 것은 實際에는 極히 어려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集團安全保障이 結局 그 本質에 있어서 힘에 依한 平和의 保障方式이란 것 卽 戰爭을 防止하기 위하여 戰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自己矛盾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國際聯盟이나 國際聯合의 경우에도 組織 그 自体가 直接 그 強制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加盟國의 힘을 集結하여 平和의 破壞를 防止하고 抑制하려고 함에 不過하다. 따라서 武力에 依한 強制措置가 發動되는 경우에는 加盟國의 武力을 集結하여 侵

略國에 對備하는 것으로서 名分은 어떻든 實質的으로는 國家對 國家의 戰爭이기 때문에 強大國이 侵略者인 경우에나 또는 強大國의 支援을 받는 國家에 對하여는 世界大戰의 危險을 覺悟해야 한다는 自己矛盾에 봉착한다.

以上과 같은 集團安全保障은 宿命的인 自己矛盾을 가장 甚刻하게 表示한 境遇가 韓國動亂 때였다. 이 경우 國際聯合軍이라 할지라도 그 實은 美國軍을 中心으로 한 것이며 參戰國 16個國이라는 그 數에 있어서는 相當한 國家가 參戰하고 있었지만 實際 內容은 各分上의 參加였다. 그리고 國際聯合 會員國의 數에 比해 보면 極히 少數였다. 따라서 初期 段階에 있어서는 實質的으로 北傀와 韓國 및 美國軍의 戰爭 形態를 취하였지만 中共이 參戰한 뒤부터는 美國軍 對 中共軍의 戰爭 形態로 發展하고 그 때문에 國際聯合에 依한 平和 回復을 위한 強制措置가 往復戰爭으로 되어 韓國은 悲慘한 運命에 빠지게 되고 그 結果는 38線休戰이란 虛無한 結果를 招來하게 하고 말았던 것이다. 北傀 뒤에는 또하나의 超強大國인 蘇聯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世界大戰을 우려한 美國民의 輿論은 맥아더의 適切한 戰略構想도 빛을 보지 못한 채 老兵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또 1971年의 印度·파키스탄戰爭에서도 國際聯合은 아무런 役割도 못 했던 것이다. 安全保障理事會에서는 3極을 이루는 美·蘇·中共이 서로의 利害關係 때문에 舌戰만 되풀이 하다가 拘束力 없는 總會에 넘기는 結果를 가져왔으며 그렇게 되니 總會

亦是 卽족한 수가 있을 理가 없었다. 結局은 強者가 弱者를 누르는 結果밖에 다른 道理가 없었던 것이다. 印支事態도 마찬가지이다. 平和回復이란 立場에서 볼 때, 國際聯合이 어떤 役割을 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自由陣營의 總師格인 美國 혼자 自由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 지쳐 손을 떼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國際聯盟이나 國際聯合에 依한 集團安全保障이란 宿命的인 限界가 있어서 平和 維持를 위한 安全保障으로서는 樂視할 수 없는 것이다. 卽 一般的 集團安全保障은 權力政治를 克服하지 못한 自己矛盾 때문에 그 理想을 現實化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것을 補完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이다.

이 地域的 集團安全保障 中에는 一定地域의 安定과 平和 維持에 力點을 두고 있는 集中型(完全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인 로카르노 協定과 美洲機構가 있다.

로카르노條約은 第一次 世界大戰 뒤 벨사이유체제의 維持·補強을 追求하는 仏蘭西를 中心으로 한 西方側의 主張과 賠償 및 軍事強制 條項의 廢止·領土 回復을 追求하는 獨逸의 主張과의 打協的 產物로서 仏·獨·英·伊·白間의 라인란트 保障이 中心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1925).²⁷⁾

그러나, 仏蘭西가 끈질기게 主張하던 獨逸의 東部國境保障 問題는

27) 松隈徳仁, 『ロカルノ條約』 集團安全保障の研究 (東京; 日本國際政治学会, 1959), pp. 34f.

英國의 消極的 態度로 結局 國際聯盟에 맡겨 두는 未決事項으로 남겨 두었던 것이다.

또한 로카르노條約은 蘇聯의 膨張을 封鎖하기 위한 西方陣營의 布石으로서 또 새롭게 抬頭하려는 獨逸을 蘇聯과의 接近을 막고 西方側에 묶어 두자는 目的과 獨逸의 膨張을 막기 위하여는 排他的 敵對關係를 갖는 것보다 友邦에 끌어들이므로써 緊張을 解消해 보자는 目的으로 이룩되었던 最初의 集中型 地域的 集團安全 保障 形態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初期 段階에서는 첸버레인·슈트레저칸·뿌리앙 등이 그 功績으로 노벨 平和賞을 받을 程度로 緊張이 緩和되고 平和에 이바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当初에 問題로 남겨 두었던 獨逸의 東部 國境의 保障 問題에 있어서는 亦是 仏蘭西의 憂慮대로 그 方面에 있어서의 獨逸의 進出을 막지 못했다. 敗戰國이긴 하지만 獨逸이 甘受해야 할 不滿은 時間과 더불어 露出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5년 뒤인 1939년에 獨逸이 라인란트에 進駐함으로써 로카르노條約의 戰爭抑止 機能은 無力하게 되었던 것이다. 勿論 로카르노條約이 仲裁·調停의 規定에 力點을 두고 裁制 規定은 오히려 弱화시킨 事實, 그리고 東部 國境의 保障 問題가 英·獨의 主張으로 故意的으로 輕視한 不安定性이 있었지만²⁸⁾

28) 上揭書, p.33.

이렇게 볼 때, 로카르노條約은 그 初期 段階에 있어서는 緊張緩和에 相當한 有効性을 지니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內包한 矛盾으로 인한 現狀不滿勢力(獨逸)이 抬頭하게 되면 安全保障의 有効性은 不安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即 現狀 不滿 勢力이 抬頭할 때, 勢力均衡의 原理로 되돌아감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로카르나條約의 有効性은 一時的이고 相對的이었다고 評價할 수 있다.

美洲機構(OAS)는 美國을 中心으로 하여 美洲 19個國(큐바·보리비아 脫退)에 依하여 汎美主義의 傳統에 따라 汎美聯合으로부터 發展하여 1947年 9月 全美洲相互援助條約, 1948年 4月의 美洲機構 憲章에 基하여 國際聯合 憲章에 依한 地域機構로서 1951年 2月에 成立된 集中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 形態이다.

美洲 및 周辺地域 그린란드에 對한 外部로부터의 侵攻은 (어느 1國에 對한 攻擧이라도) 美洲 全體에 對한 攻擧으로 보아 集團的 對抗措置를 取하는 것을 內容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 實際에 있어서는 美國 主導에 依한 防共의 色彩가 뚜렷하며 美洲 國家에 있어서의 共產政權의 樹立을 抑制하는 作用을 하고 있으며, 別다른 問題는 없었다. 이것은 그 地域이 美國의 安保에 致命的인 곳으로 美國의 圧倒的인 主導下에 小國들이 모여 있으므로 美國과의 一戰을 決하지 않는 限 内外로부터의 侵入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別問題는 提起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 有効性에 있어서 그러한 特殊 事項을 考慮하여 볼

때 肯定的이라 할 수 있다.

단지 美国의 支配에 반발하는 中南美 諸國의 抬頭은 그런 範圍 내에서 多少 不安한 要素는 内包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冷戰의 發展이라고 하는 國際政治 狀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集團防衛型(不完全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으로 自由陣營에 있어서 北大西洋條約機構·西歐聯合·ANZUS·東南亞細亞防衛條約 등이 있고, 共產陣營에 있어서는 와르샤와 協定이 있음은 이미 보아 온 바이나 이들 集團防衛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은 外部로부터의 危脅에 對한 共同 防衛를 주된 動機로 形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軍事的 共同防衛에 그 重點을 두고 確立되었다.

自由陣營에 있어서의 集團防衛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은 모두 共產陣營에 對한 對抗的 性格을 가지는 同盟체制的 形態이며 또 共產陣營의 것인 와르샤와 協定은 北大西洋條約機構에 對抗的인 것이다. 이와 같이 集團防衛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 形態는 旧同盟체制的인 性格으로 그 实效性이 不完全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集中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은 一般的 集團安全保障의 原理를 그대로 一定 地域에 適用한 것으로서 比較的 相對便을 刺戟하지 않고 對話의 廣場을 갖는다는 점에서 緊張緩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一般的 集團安全保障이 갖는 결합과 矛盾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集團防衛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은 旧同盟체제에 比하여 經濟協力 등 非軍事的 側面을 갖고 있어 相當히 發展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나 그 本質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一般的 集團安全保障의 不完全한 機能을 補完한다는 意味에서 또 地域的 問題를 地域的으로 解決하는 것이 便利할 때도 있다는 點을 考慮하면 그런 限界內에서 存在 意義가 있다 하겠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集團的 安全保障은 勢力均衡을 否認하고 諸國家의 集團的 努力으로 世界平和에 이바지하겠다는 그 理想은 훌륭한 것이었으나 그 實際에 있어서는 主權을 單位로 하는 權力政治의 作用으로 強大國의 利害關係의 一致에 依한 協力 없이는 本來의 役割을 다하지 못하는 現實이다.

이것을 補完하기 위한 것으로서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이 發展하였으나 集團防衛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은 舊同盟體制的 性格으로 冷戰을 오히려 高潮시키는 逆作用을 할 수도 있으며 集中型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은 로카르노協定이 初期 段階에서 보여 준 것처럼 相當히 緊張을 緩和시키지만 現狀 不滿을 품고 現狀을 打破하려는 勢力이 있게 되면 勢力均衡의 原理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亦是 不安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對話의 通路와 相互 理解의 可能性도 期待해 볼 수 있다는 點에서 多少 有利한 形態라 할 수 있겠다.

라. 小 結 論

個別的 安全保障은 短期的으로 볼 때는 現實的 實効性이 있으나 長期的인 眼目으로 볼 때에는 緊張造成 등 不安의 要因을 지니

고 있어 限界性이 있다.

中立的 安全保障은 敵對關係를 갖지 않고 危險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長點도 있다 하겠으나 그 實効性은 至極히 特殊한 狀況에서만 있을 수 있고 一般的으로는 權力政治의 現實에서는 그 保障은 不確實하다.

集團的 安全保障은 勢力均衡 原理를 否認하고 集團의 努力으로 平和를 達成하고자 하는 높은 理想은 지니고 있으나 亦是 權力政治를 克服하지 못하는 現實이다.

一般的 集團安全 保障의 欠함을 補完하기 위한 것으로 地域的 集團安全 保障이 發展하였으나 不完全한 狀態이다.

集團防衛型은 긴장造成의 憂慮가 있음에 比하여 集中型은 긴장을 緩和하는 側面이 있다는 相違點뿐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스스로의 힘에 依하여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을 첫째로 하여 個別的 安全保障에 依한 國防力을 徹底히 하고, 汎世界的 기구인 國際聯合(一般的 集團安全保障)과의 關係를 密接히 하여 國際輿論이란 힘을 自己 편으로 만들면서 各 狀況에 따라 有利한 形態를 取하는 것이 合理的이라 할 수가 있겠다.

4 . 韓半島와 4 大國 政策

가 .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1866年 서어먼號 事件으로 美國은 韓國에 對한 關心을 갖게 되고 그 16年 뒤인 1882年에 슈펠트提督에 依한 韓美修交條約이 締結되어 韓美間의 正式 外交關係가 樹立되었던 것이다.

그 뒤 美國은 韓國에 對하여 東洋의 한 小國으로서의 好奇心外는 特別한 關心 없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國際紛爭에 介入하지 않고 中立을 지키는 政策을 取해 왔다. 그러나 淸日戰爭에서 日本의 勢力이 強力해짐에 따라 日本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親日的 傾向으로 기울어져, 日露戰爭 때에는 日本을 편들고 드디어는 1905年에 태프트·桂 協定을 맺어, 비올빈에 對한 既得權을 차지하는 代身 韓國을 日本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 結果 美國의 뒷받침을 받는 日本에 依하여 乙巳保護 條約이 맺어지고 1910년에는 韓日合邦이 되고 말았다.

第二次 世界大戰이 始作됨으로부터 韓國에 對한 關心을 새롭게 하기 始作하여, 1943年 11월 카이로會談에서 韓國의 獨立을 約束하는 카이로宣言을 英·中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5年 2月 알타會談에선 韓國에 對한 信託統治案을 들고 나와 소련과 合意하였던 것이다. 그 뒤 1945年 7月에 英·中과 함께 포츠담宣言을 통해 카이로宣言을 再確認하게 되었다.

그 뒤 第二次 大戰의 終幕과 함께 韓國은 解放을 맞았으나 美

• 蘇에 依하여 38線으로 分割 占領되고, 豫定대로 美·蘇는 韓國의 信託統治의 實現을 爲해 努力하였으나 意見對立으로 決裂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國際聯合에 依해서 南韓에서만 自由선거가 實施되고 大韓民國 政府가 1948年 8月 15日에 樹立되고 駐韓美軍은 撤収하였다.

1950年 1月 에치슨 라인에 宣言되고, 코넬리 上院 外交委員長도 " 韓國에서 戰爭이 일어나더라도 美軍은 介入하지 않을 것이다 " 고 했던 것이다.¹⁾ 그리하여 北傀의 南侵을 誘發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6. 25 以前 까지의 美國의 對韓政策은 韓國에 對한 認識不足과 東北匪에 對한 情勢 判斷의 잘못으로 失手와 失敗를 連續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25 動亂이 발발하자 美國은 卽刻 介入하고 UN을 通하여 侵略者의 格퇴를 決議하게 되고 그 行動을 取하였다.

이것은 戰後 美國의 封鎖政策의 한 表現이며 極東에 있어서의 共產主義 勢力의 膨脹이 다른 地域에 그 影響을 미치게 되는 점과 親美的 新生 諸國의 美國에 對한 信賴感 喪失을 두려워 했던 점 등으로 美國은 果敢한 行動을 取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 分斷에 對한 失手를 이機會에 만회하여 韓國再統一의 機會로 삼았어야 하였을 터인데, UN에서 中共을 侵略者로

1) 李範俊 「韓美關係의 歷史的考察」 國土統一, 第 4号 (1970.10)

規定하였음에도 맥아더將軍의 統一戰略을 견제하고 트루만大統領과 美合參本部는 美第 8軍의 一次的 使命은 日本의 安保에 있다고 數次 想起시켰고 2) 끝내 그를 召喚하고 38線 現狀 維持를 固定시켰던 것이다.

여기에서 美國은 韓國을 極東에 있어서 日本의 한 附隨的 地域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 韓國動亂으로 美國은 韓國을 極東에 있어서의 對 共 防衛의 戰略的 基地로서 그 重要性을 認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3年 10月 韓美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고 經濟 및 軍事 援助를 提供하는 積極的인 對韓政策을 振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美日安保條約・ANZUS・美比防衛條約・SEATO・美自由中國防衛條約 등을 締結함으로써 共產勢力 即 蘇聯과 特히 中共의 進出을 封鎖하는 同盟體制를 強化하였던 것이다.

그뒤 1960年에는 新美日保條約을 締結하여 日本으로 하여금 極東平和와 安全保障에 關하여 美國과 共同으로 協議하고 行動하기로 하여 極東에 있어서의 共產主義 封鎖 勢力의 中心的 役割을 맡게끔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美國의 積極的인 對韓政策도 實際로 問題點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美國의 韓國動亂의 介入도 韓國自體의 重要性보다는 極東에 있어서 共產勢力의 封鎖를 위한

2) 上揭書, p. 90.

아시아防衛의 一環이었던 點과 韓國을 日本防衛의 附帶的 地位로 삼고 있다는 點이며 그리고 韓美防衛條約도 韓國政府가 休戰協定을 받아드리는 때 對한 一種의 補償으로 이루어졌다는 事實이며³⁾ 그 內容에 있어서도 被侵이 있을 때 自動的으로 介入하는 것이 아니라 憲法節次에 따라 介入하게끔 되어 있다는 點이다.

이와같이 冷戰期에 있어서의 美國의 對韓 政策이 韓國의 戰略的 價値에 對한 뚜렷한 評價를 가지지 않고 對共封鎖政策의 一環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던 중 美國은 冷戰體制下에서 全自由世界의 警察로서 指導的 役割을 떠맡아 莫大한 國防豫算의 過重한 負擔으로 존슨의 이른바 "偉大한 社會"로 表現되는 社會開發 등 諸般 國內問題 解決에 支障을 招來하게 되고, 따라서 새 世代를 비롯한 國內 孤立主義 傾向에 依한 刺戟⁴⁾ 그리고 越南戰의 디렘마 등으로 從來의 政策을 再檢討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닉슨·독트린을 宜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內容은 첫째, 旧條約上의 모든 公約은 지킬 것이다. 둘째, 美國과 同盟關係에 있는 어느 한 國家가 그리고 그 存続이 美國의 安全保障에 死活的인 重要 國家라고 生覺되는 國家의 自由를 核保有國이 위협

3) 金瓊元, "韓半島平和問題와 4大國關係"; (未刊行, 學術用役, 國土統一院, 1974), p.8.

4) 리차드·엘·닉슨, "70年代 美國의 外交政策," 安全保障, (1971年6月), pp.44ff.

했을 경우에는 그 防備를 提供할 用意가 있다. 셋째, 他種類의 境遇에도 우리들은 條約上의 公約에 따라 要請이 있으면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提供할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直接 危脅을 받는 國家가 스스로의 防衛를 위해 兵力을 供給하는 一次的 責任을 질 것을 바랄 計劃이다.⁵⁾ 라는 것이다.

이 닉슨·독트린에 따라 越南戰의 越南化 計劃이 樹立 實踐되고 亞細亞 諸地域 即 越南, 泰國, 日本, 韓國 등으로부터의 美地上 軍을 中心으로 한 駐屯軍의 단계的 撤収가 이루어지고⁶⁾ 日本의 美國의 役割 代행을 위해 韓國防衛는 日本에 必須的이라는 닉슨·佐藤 聲明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70年1月 닉슨大統領은 一般約書에서 "다음 世代를 美國이 世界 모든 國家와 더불어 平和를 享受한 今世紀 最初의 世代로 이룩하는 일보다 더 偉大한 目標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⁷⁾ 同年2月28日 世界政策 約書에서 1970年代 美國의 外交 政策의 基調와 方向은 冷戰의 時代에서 協調의 時代로 轉入했다고 뚜렷이 내세웠다.

即 世界警察國家로서의 地位를 벗어나 他國 問題 不干涉, 友邦 및 同盟國家와의 關係를 支配體制에서 協商體制로 轉換, 蘇·中共과

5) 上揭書

6) 『美國情勢』, 東亞年鑑, (서울; 東亞日報社), 1971年,

p.180f.

7) 리차드·엘·닉슨, 前揭書

의 協商 등의 基本方向을 밝혔다.

그리하여 亞細亞에 있어서 中共과 대당뜨를 즐기면서 越南問題 등의 諸般 靑안문제의 解決에 努力하면서 一名譽로운 靑수계획이 치욕적인 후퇴가 되었지만 一 亞細亞의 亞細亞化를 위한 日本의 美 役割 代행을 위해 日本의 防衛計劃에 軍事 技術 援助를 담당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日本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世界的 勢力國家로 再登場을 하게 되는 國力の 現實化 政策을 쓰게끔 하였던 것이다.⁸⁾

韓國에 對하여는,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위한 어떤 措置를 取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協議하면서, 잘 監視된 선거를 通하여 韓國 國民이 選擇하게 될 平和로운 韓國의 再統一을 위해 南北韓의 對話가 이루어질 수 있는 領域을 찾아보도록 慫慂하였던 것이다.⁹⁾

以上에서 美國의 對韓 政策을 다음과 같이 整理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自体防衛能力이 主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韓國軍의 現代化를 通해서 美國의 軍事的 役割이 代置된다. 둘째, 韓國에 있어서의 美國의 直接的인 軍事役割의 終熄은 間接的인 軍事的役割의 終熄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核保護를 通하여 中共이나 蘇聯의 直接的인 軍事行動을 抑制한다. 셋째, 韓美防衛條約상의 任務는 계속 遂行한다. 넷째,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通하여 勢力均

8) 李基沢 「日本の 進出과 展望」, 安全保障, (1971年11月), p.13.

9) 「사이 밍튼 聽問錄」, 東亞年鑑, (서울; 東亞日報社), 1971年, p.339f.

衡을 깨뜨리지 않는다. 다섯째, 政治的으로는 脱이 메올르기로 理念的次元이 아닌 現實的次元에서 安全을 追求한다. 여섯째, 安保的次元에서 韓·日·美의 連帶關係로 連結한다. 등으로

그런데 닉슨·독트린에 依하여 美國이 越南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既定 事實이었으나 期待했던 一바와 같이 名譽로운 撤収가 되지 못하고, 티우政權의 無能과 極에 達한 부패에 큰 原因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外交的 失敗와 軍事的 參敗로 치욕的인 퇴각을 하게 되었으며 인접 自由國家가 마치 도미노理論을 구가하는 것처럼 차례차례로 넘어져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이 印支事態의 衝擊으로 美國의 對外公約에 對한 信賴度가 추락되고, 世界의 耳目은 韓半島로 쏠리게 되었다.

美國은 同盟諸國 및 親美的 新生諸國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그리고 北傀의 南侵을 막기 위하여 對韓 公約을 洪水같이 쏟아내고 있다. 即 韓美防衛條約은 美國의 最高法律이다. 北傀가 南侵해 오면 初戰에 北傀의 心膈部를 強打하겠다. 戰術核武器를 使用하겠다. 先制 核攻擊하겠다. 등으로 表現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되는 公約은 美國의 同盟 諸國 및 親美的 新生 諸國의 동요를 막기 위한, 쇼크에 對한 中化作用을 하는 것이며 또한 지긋지긋한 印支戰의 再現을 상상하면서 北傀의 挑發과 南侵 企圖를 事前에 견제하기 위한 威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마야게즈트 事件이 그 좋은 본보기¹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印支事態 以後 닉슨·독트린이 修正되고 있는 特別한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¹¹⁾, 印支쇼크라 하지만 印支에서 손을 떼기로 한 데서부터 豫想했던 쇼크인 것이다.

그렇다면 駐韓美軍은 계속 駐屯시킬 것인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이 問題는 다음 몇 가지 理由로 相当 期間 계속 駐屯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첫째, 印支쇼크를 加重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韓國으로부터의 撤収는 亞細亞로부터의 마지막 撤収가 될 것이며 同時에 亞細亞 特別히 日本 防衛에 重大한 影響을 가져 올 것이다. 셋째, 北傀의 南侵 企圖를 牽制해야 한다. 넷째, 술레진저 美國防 長官의 防衛戰略으로 駐韓美軍은 유럽에 있어서 蘇聯軍의 増大를 견제하기 위하여¹²⁾ 다섯째, 韓國과 日本의 核武裝의 抑制를 위해서 일 것이다.¹³⁾

그러나 長期的인 眼目으로 볼 때 相對的인 것이다.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은 美國의 國家利益과 美議會를 비롯한 國內 輿論 등이 交互作用하는 가운데서 맨스필드 上院議員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結局 憲法上의 節次에 따라 決定되어질 果題라 할 것

10) 杉浦正章 「アメリカの新アジア防衛戰略」, 世界週報, (1975年 6月), p.18

11) 朴錫均 「美國의 對韓防衛公約과 韓半島政策」, 安全保障, (1975年 7月), p.21

12) 「美國의 아시아防衛政策」, 美國政策 및 背景시리즈, (USIS), p.7

13) 杉浦正章, 前掲書, p.18.

이다.¹⁴⁾

나.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蘇聯은 帝政러시아 以來 傳統的인 南進政策으로 인접 亞細亞國家인 韓半島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對韓政策을 追求해 왔으며, 푸로레타리아革命 뒤에도 膨脹主義的 性格은 如前하여 社會帝國主義的 pax Russiana 를 構想하고 있었던 것이다.

第二次世界大戰의 末期에 對日戰爭에 參戰하여, 韓半島로 進駐하여 38線 以北을 占領하고, 日本은 敗亡하고 中國은 內戰으로 加진해 있을 때 北韓을 共產衛星國으로 만들어 帝政 러시아 以來의 꿈을 實現시키는 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위 反帝國主義·反植民主義를 내세워 革命 장려 政策으로 革命輸出을 企圖하였던 것이며, 軍事·經濟 援助를 大量的으로 提供하여 北德의 6.25南侵의 機會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積極的인 介入과 中共의 登場으로 積極政策을 消極政策으로 轉換하였고, 1960年代부터 始作된 中·蘇 紛爭과 日本

14) "New debate; is U.S. Carrying Toohary a burder abroad?" U.S. news & world report July 7, 1975, p.25.

의 登場으로 中共과 日本 特히 中共을 牽制해야 하는 理由 때문
에 東北匪政策에 變化를 가져와 革命輸出을 中止하고 既存 政府와
友好關係를 증진하는 方向으로 선회한 것이다.

北傀가 中·蘇 對立을 利用한 소위 自主路線으로 中·蘇 等距離
外交를 取함으로써 蘇聯의 軍事的 元조는 相對的으로 되고, 따라서
韓半島에 對한 影響力에 있어서도 相對的으로 弱化되었다.

그러나, 그 影響力이 抑制되고 있는 것은 中·蘇對立 때문이며,
中共勢力이 後退하면 언제든지 그 影響力을 行使할 수가 있는 것
이다. 오히려 中·蘇 紛爭은 蘇聯의 對韓半島에 對한 政治的 戰
略的 利害關係를 增大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美·中共間의 테팡뜨가 이루어졌다. 美
國과 中共은 다 함께 蘇聯을 견제해야 하는 同一한 目的이 있었
던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은 中共을 견제하기 위해 美國과의 關
係를 더욱 改善해 나가야 하고, 또한 日本이 中共과 密着하지 않
도록 견제하기 위하여 시베리아開發 등으로 유인하면서 日本과의
關係 改善을 해야 하는 立場이 되었다.

따라서 韓半島를 둘러싸고 美·蘇·中·日의 4大國 體制가 이룩
되었다. 그리하여 蘇聯의 北韓에 對한 立場은 더욱 自由롭게 되

었다. 왜냐하면 北韓은 이러한 狀況 속에서는 理念的인 것보다는 現實的이고 實際的인 支援을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蘇聯은 理念的인 面에 神經을 쓸 必要 없이, 北韓의 等距離外交 即 소위 自主路線에 自由롭게 처분해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또한 非理念的인 性格의 4 大國体制의 形成과 美國의 新孤立主義에 따라 蘇聯은 北韓뿐 아니라 韓國에 對해서도 關心과 影響力을 追求하게 되고, 더우기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追求하기 위해서도 韓國과의 유연한 關係를 取할 必要가 있게 되는 것이다.¹⁵⁾

그러므로 北韓과는 現在의 關係를 유지하면서 機會가 마련되면 韓國과도 關係改善을 해나가는 方向으로 努力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긴장이 高潮되는 것보다는 緊張이 緩和되는, 現狀유지를 바랄 것이다. 긴장高潮는 日本의 核武裝을 誘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日露戰爭에서 경험한 것처럼 東北亞에 있어서 만만찮은 強敵을 맞이하게 되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金日成의 모스크바 訪問을 廻避하고 있으며, 이것은 北僞의 南侵을 견제하기 위한 措置로 알려져 있다.¹⁶⁾

15) 金玃元, 「韓半島平和問題와 4 大國關係」, (未刊行, 學術用役, 國土統一院, 1974. 11), p. 19

16) 辛承權, 「東北亞에 있어서 蘇聯의 國家利益」, 政經研究, (1975年 4月), p. 46

그리고, 駐韓美軍의 撤収도 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美軍의 撤収는 힘의 空白(韓國에 있어서)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空白을 日本이나 中共이 메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結果를 蘇聯이 決코 願하지 않을 것이다.¹⁷⁾

다음으로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 構想과 關聯하여 對韓半島 政策을 검토해 보는 것이 重要하리라 生覺한다.

애초에 亞細亞 集團安保 問題는 1954년부터 1958년에 이르는 中·蘇 蜜月時代에 中共과 蘇聯이 共同으로 提起하다가 1960년부터 中·蘇紛爭의 激化로 空白狀態로 들어갔다가 1969年 蘇聯에 依하여 다시 提起되었다.¹⁸⁾

即 1969年 6月 世界共產黨 大會에서 부르즈네프가 演說하는 가운데 亞細亞 集團安保에 關하여 言及하고, 그 뒤 1973年 2月 모스크바放送을 통해 蘇聯의 現狀維持 政策과 關聯하여 아시아集團 安保 構想을 解説하였는데, 그 內容은, 첫째 國家間의 武力行使의 拒否, 둘째 主權의 尊重과 國境의 不可侵, 셋째 內政의 不予涉,

17) 中央日報, 1975年 6月 24日字 1面.

18) 金炳璘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에 對한 視角", 政經研究, (1973年 12月), p.114f.

넛깨 平等과 互惠에 基礎한 經濟協力 그리고 附隨하여 平和共存과 民族自決 原則 등을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南北 不可侵 協定 提議의 內容과 相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으며, 歐洲에 있어서의 東·西間의 集團安保 構想과 關聯하여 볼 때 南北韓이 모두 包含되는 것이 明白하다.¹⁹⁾

그러나 北傀가 中·蘇對立을 利用하는 狀況을 볼 때 公公연히 내세우지는 못하는것 같다. 이것은 当初에 中共과 共同으로 提起하였다는 點에서도 推理할 수가 있거니와 지난 1975年 6月 25日 아시아集團安保會議 開催를 다시 提起하면서, 이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軍事同盟도 아니며 中共에 對抗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中共의 參加 缺인 無意味하다고 하였다.²⁰⁾

勿論 現狀維持라는 意味 속에는 中·蘇國境 紛爭에서 中共이 領土變更을 要求하고 있음에 이를 拒否하고, 日本의 北方領土 返還 要求도 拒否하겠다는 숨은 意圖도 있겠으나, 韓國과 關聯하여 볼

19) 朴泰植,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과 韓國安保", 安全保障 (1975年 7月), p.11.

20) 中央日報, 1975年 6月 25日 字 3面

半切
紙

때 韓半島의 現狀維持 卽 韓半島의 分斷狀態를 既定事實로 認定하여 美·蘇間의 테땅뜨의 틀 속에서 韓半島 問題도 包含시킬 수 있다는 立場이다.

또한 歐洲 集團安保 構想이 西歐에 있어서의 美軍의 駐屯과 東歐에 있어서의 蘇軍의 駐屯을 前提로 하는 것으로 볼 때 駐韓美軍의 계속 駐屯도 認定하는 것으로 解釈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아시아 集團安全保障 構想과 우리의 政策과는 最少限 正面으로 背馳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²¹⁾

21) 金瓊元, 前揭書, p.36.

다.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

中國은 韓半島와 隣接되어 있는 地域으로서 그 關係는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大體로 보아서 中國은 世界의 中心이란 中華思想으로 韓半島를 邊境의 小國으로 取扱하여, 衛星化하는 政策을 取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安保的인 側面에 重點을 두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安保에 危脅이 되지 않는限 積極的인 植民地化는 企圖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近代에 들어와서는 帝國主義 列強들의 侵略을 받아 몹부림치게 되었고, 그러므로 自然히 對外政策에 있어서 守勢를 取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特別히 韓半島를 通하여 밀어 닥치는 日本 帝國主義를 맞이하여 韓國과는 共同의 敵에 對抗해야 하는 까닭으로 同志的 友好 關係를 갖게 되었다.

勿論 具體的으로는 韓國의 獨立運動의 指導 구름이 되겠지만은,

第二次 世界大戰 뒤 內戰으로 紅疫을 겪는 동안 韓半島는 聯合軍 卽美·蘇에 依하여 南·北으로 各各 分割 占領되고, 北韓은 소련에 依하여 共產衛星國으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中·蘇 蜜月時代가 계속하는 限 韓半島로부터의 威脅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졌기 때문에 對韓半島 政策은 消極的으로 되었다.

그러던 것이 6·25 動亂으로 緊張이 高潮되고, 1950년에는 美國을 中心한 國聯軍이 鴨綠江까지 進擊함으로써 韓滿 國境으로부터 그들의 安保에 威脅을 느끼게 되었다. 더욱이 滿洲가 차지하는 産業

經濟的인 比重이 큼에 따라 神經을 곤두세우게 되어 積極的으로 介入을 해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邊境 地域으로서, 北韓만으로도 安保上에 있어서는 別 問題가 없었기 때문에 3·8線 休戰에 同意하게 되었고, 美國의 封鎖政策 등과 關聯하여 傳統的인 守勢政策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中·蘇 紛爭이 惹起됨으로써 韓半島에 對한 關心은 相對的으로 增大된 것이다. 即 北傀와 소련이 密着하는 것을 견제해야 하는 必要性이 생기게 된 것이다. 北傀와 소련이 密着하게 되면 그들의 安保에 重大한 威脅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北傀를 소련으로부터 격리시켜, 自己 편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近代 以後 傳統的으로 追求해 온 守勢政策에 多少 變化를 가져와, 積極性을 띠게 된 것이다. 特히 後進國 革命 支援에 있어서 소위 「自力革命論」에 依한 消極政策 即 露骨的인 介入을 하지 않는다는 一般論을 韓半島에 그대로 適用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休戰協定 뒤에도 北傀의 主張을 뒷받침해 왔으며, 韓國에 對하여는 北傀와 同調하여 敵對的 態度를 取해 왔던 것이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美國과의 대당프 뒤에도 如前히, 國際聯合을 비롯한 國際社會에서 北傀를 뒷받침해 왔다. 北傀의 後見者的 役割을 充實히 하여 北傀의 閉鎖的이고 孤立的인 姿勢로부터 多角的인 國際關係를 갖게끔, 第三世界의 리더로서 그 影響力을 發揮하였던 것이다.

多格化 時代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패턴을 따른 것이다. 하겠지만 中共의 後光을 크게 힘입어, 北傀는 相當한 成果를 올리고 있다.

이와같은 일은 中共이 美國과의 대당뜨에 따른 北傀의 反撥을 무마하고, 소련과의 接近을 막기 위한 措置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蘇 紛爭과 韓半島 4強體制의 成立에 따른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을 大體로 다음과 같이 整理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勿論 手沢東 死後에 政權을 穩健派가 繼承할 것인가 強硬派가 계승할 것인가에 따라 相當한 差異가 있겠으나, 4強중에서 가장 劣勢에 놓여 있다는 事實을 考慮할 때 큰 波動은 없을 것이다.

첫째, 積極的인 攻勢로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 韓半島 紛爭에 介入을 願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紛爭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韓半島에 있어서 現狀破壞보다는 現狀 維持를 願할 것이다. 넷째, 北傀의 對蘇 接近을 막기 위해 駐韓 美軍의 撤収를 北傀 主張대로 合唱하고 있으나 實際는 駐韓 美軍의 계속 주둔을 願할 것이다.²⁴⁾ 그 理由는 첫째 駐韓美軍이 소련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고, 둘째 駐韓美軍의 撤収 뒤에는 日本이 登場할 것이므로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駐韓 美軍이 계속 駐屯을 해 주지 않을 때에는 武力 紛爭을 廻避하는 立場에서 美·蘇·中·日 등 4強의 保障 下의 中立化 統一 같은 것

註²⁴⁾ 柳世熙,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國土統一』 (1974年 7, 8, 9 月), p. 219.

金元, 『韓半島平和問題와 4大國關係』, (未刊行, 學術用役, 國土統一院, 1974. 11.), p. 24.

羅昌柱, 『東西亞에 있어서 中共의 國家利益』, 『政經研究』 (1975年 4月), p. 79.

『中央日報』, 1975年 6月 16日 字 1面.

을 願할지 모른다. 22) 여섯째 北傀가 蘇聯과 密着하지 않는 限 韓國과의 接近을 迴避할 것이다.

그리고 1955年 4月 반둥의 亞阿會議에서 國際諸問題의 解決策으로 平和 5原則을 내세웠다.

即 領土, 主權 尊重, 不侵略, 不干涉, 平等 互惠, 平和的 共存등이다. 그리하여 이 平和 5原則을 對外政策의 基本 原理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이 平和 5原則이 韓半島 事態와 關聯하여 풀이해 보는 것도 重要한 意味가 있을 것이다.

形式論理的으로 볼 때, 7.4 南北 共同 聲明의 統一 平和原則과 背馳되지 않는다. 또한 實際에 있어서도 現狀 固定化가 그 本質인 것이다. 따라서 現狀 固定化가 前提가 될 때 平和 5原則이란 우리의 平和共存 統一原則과 最少限 相馳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毛沢東의 戰爭可避 革命不可避論 即 核中心의 世界大戰은 避할 수 있으나 民族 解放 鬪爭은 避할 수 없다는 論理²³⁾가 緊張 緩和의 死角地帶를 出現케 할 伏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在의 4強體制에 根本的인 變化가 없는 限 美·中共의 태양뜨의 틀 속에서 現狀 維持와 緊張 緩和를 追求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註22) 金瓊元, 前揭書.

23) 崔榮, 『中共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과 戰略』, 安全保障, (1975年 7月), p.175.

라.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설나라 日本은 倭國으로 古代 百濟 高句麗 등 韓半島로 부터 文化的으로 敎化를 받아 왔으나, 近世에 들어옴으로부터 統一 日本을 形成하게 되어 機會있을 때마다 韓半島를 侵略해 왔다.

近代에 와서는 明治維新으로 近代國家로서 發展을 보게 되고, 第一 먼저 韓半島를 그의 帝國主義 侵略의 對象으로 삼았으며 韓半島를 발판으로 匪細匪 大陸을 攻略하였던 것이다.

第二次 世界大戰 뒤 韓國에 對한 植民統治에는 終止符를 찍었으나 美國의 품안에 安保를 委託하고 경제적 伸長을 圖謀하던 중 6.25 動亂이 나고, 이것을 契機로 莫大한 利益을 보아 戰後 경제 부흥과 發展에 決定的 契機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은 그들의 國家利益이란 立場에서 볼 때 韓半島는 第一次의 關心 地域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現在 GNP 世界 第三位란 經濟力도 韓·美·日 間의 三角關係에서 成長해 왔으며, 對外 總投資에 있어서도 對韓投資가 그 總額의 $\frac{1}{4}$ 以上(25.5%)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과 韓國과의 關係는 不可分의 關係이며, 同時에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連帶關係의 틀 속에서 生覺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70年까지는 그들의 經濟分離原則에도 不拘하고 韓國 一刃倒 政策을 追求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서 東西 緊張緩和와 1972年 南北韓

7.4 共同声明 및 6.23 宣言으로 나타난, 韓国外交 現實化 政策의 影響下에 韓國 一辺倒에서 全韓半島 政策으로 次元을 넓혀, 소위 南北韓 等距離 外交의 口實로 삼아 경제적 實利를 追求하는 方向으로 그 政策을 轉換시켰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은 어디까지나 美國과의 連帶關係를 속에서 生覺해야 하기 때문에 南北韓 等距離 外交에도 不拘하고, 닉슨·佐藤 共同声明을 낳게 하여 韓國安全은 日本에 緊要하다고 宣言하게 된 것이다.

1975年 4月 10日의 워싱턴에서의 키신저와 宮沢外相 會談에서 닉슨·佐藤 共同声明의 韓半島의 安全이 日本에 緊要하다는 內容이 再確認되고 있는것이다. 25)

이와같이 日本은 美國의 充實한 同伴者로서의 立場을 지키면서, 또한 名實相符한 強大国으로서의 役割을 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美國과는 同等한 同伴者로서, 中·蘇와는 同等한 位置를 確保하여, 韓半島에 있어서의 既得權 및 國益을 伸張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日本外交 3原則 即 國際聯合 中心 外交, 西歐 自由陣營과의 緊密한 協調, 亞細亞圈에서의 確固한 基盤 구축이라는 比較的 융통성 있는 原則을 표방하면서 實利를 追求해 왔다.

25) 朴奉植, 『韓半島平和定着의 모택』 (未刊行, 學術用役, 國土統一院, 1975.5.), p.31ff.

그들의 安保를 UN集團安保에 名分上으로 依存하고, 美·日 安保体制의 輪 속에서 自衛隊의 戰力を 強化하는 方向에서 經濟的 發展을 圖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對美 依存的 安保도 닉슨·독트린 以後 美國이 亞細亞에서 日本의 役割을 期待하게 되고, 또 美國이 아시아에서 漸次 後退하게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政治的 軍事的 大國으로 가야 할 運命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憲法 第9條에 依한 制約을 解釈上의 問題化하여, 첫째 防禦用 核武器의 保有는 違憲이 아니라는 政策 闡明으로 核保有의 可能性을 明確히 하였던 것이다.²⁶⁾ 둘째 自衛隊의 海外 派遣問題는 國際聯合 憲章을 援用하여, 國際聯合 常備軍에 自衛隊를 參與시키는 것은 派兵으로 違憲이지만 國際聯合 行動에 參與하는 것은 派遣으로서 違憲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새로운 解釋을 내림으로써 自衛隊의 海外派遣의 길을 열어 놓았다.²⁷⁾

對 UN政策에 있어서는 1956年 12月 正式으로 會員이 된 以來 UN의 財政 支援과 後進國에 對한 經濟援助로 安全保障 理事會 非常任 理事國의 地位를 번번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拒否權이 없더라도 常任理事國의 地位를 獲得하고자 원하고 있다.

26) 吳 坪, '日本의 外交戰略속에서의 韓半島', 國土統一, (1974年 7.8.9月), p.208.

27) 金瓊元, '韓半島平和問題와 4大國關係', (未刊行, 學術用役, 國土統一院, 1974.11.), p.27ff.

그리하여 強大國과의 和解를 追求하면서,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開發途上國들과의 協調관계의 유지도 해야 하는 必要性을 同時에 意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73年 石油波動 以後 資源을 거의 全部 海外에 依存하고 있는 日本으로서 資源 供給源을 多元化하지 않을 수 없으며, 1973年 石油波動 以來 그 必要性이 더욱 切實해졌다.

그러므로 美國·中共·蘇聯 등에 資源을 分散 依存해야 하며, 따라서 美·中·蘇와 敵對的인 關係를 가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 下에 1973年 外交靑書를 發表하여 韓國과의 協力關係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北德와의 關係도 細心하게 配慮할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間의 緊張 緩和를 希望한다고 하였다.

以上の 与件下에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의 展望을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政治 軍事的으로는 統一보다는 分斷된 狀態 下의 現狀 維持를 願할 것이다. 그 理由는 아직 統一에 對한 뚜렷한 政策을 세우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統一에 對한 充分한 對備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強力한 統一韓國의 出現은 日本 安保에 威脅이 될 것으로 生覺하고 있으며, -文世光事件때 본 것 처럼 韓國 國民의 底辺에 깔려 있는 對日 感情을 쉽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어떤 潛在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더우기 共產化 乃至 親共化하여 中共 또는 소련과 提携하게 되는 경우에는 극히

威脅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經濟面에 있어서는 韓國 一辺倒에서 全韓半島 關係로 擴大시켜 南北韓 等距離 外交로 實利를 追求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닉슨 독트린과 印支事態와 關聯하여, 中·蘇와 敵對 關係를 갖지 않는 범위에서 美國을 軸으로 하는 安全保障上의 三角關係 即 美·日·韓의 連帶關係를 緊密히 하는 데 協調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美國의 役割 代行을 위한 準備를 徐徐히 해나갈 것이다.

마. 4 大國 政策과 韓半島

至今까지 韓半島의 環境的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周辺 4 大國의 對韓半島 政策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南北韓의 現在의 分斷狀態가 4 大國에 依한, 東北亞 勢力 均衡의 基礎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이 勢力均衡은 4 大國의 現狀維持 政策을 通하여 이루어지고, 이 現狀維持가 이들 4 大國의 國家利益과 一致되고 있음도 알 수가 있다.

美國과 日本은 同盟 關係를 가지고, 하나의 勢力 單位를 이루고 있으며 韓國과 連帶 關係의 틀을 形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國家利益을 追求하고 있다. 그리고 이 勢力單位는 相互 補完 하면서, 北方 大陸 勢力인 中共과 蘇聯間의 紛爭과 對立 關係를 利用하여 서로 견제시키면서 勢力 均衡을 追求하고 있다.

그리하여 韓半島 問題의 主体的 單位인 北傀의 好戰的이고 排他的인 現狀 打破 企圖를 抑制하고 있다.

中共과 蘇聯은 서로 敵對的 對立 關係를 이루면서, 南方 太平洋 勢力인 美國과 대당뜨를 追求하고 그들의 對立(紛爭)에 있어 相對편을 牽制해 주는 勢力으로 利用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狀 유지와 勢力均衡을 追求하고 있다. 그러면서 北傀와 各各 同盟關係를 맺고, 서로 相對편으로 密着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現狀유지를 固定化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國家 利益을 追求하고 있다.

또한 中共과 蘇聯은 共히 日本의 勢力 擴大를 牽制하고, 그 견제 役割을 美國에 期待하고 있다.

日本은 經濟的 實利를 追求하기 위하여, 그리고 安保的인 側面에 南北韓의 分斷 固定化로서 現狀유지를 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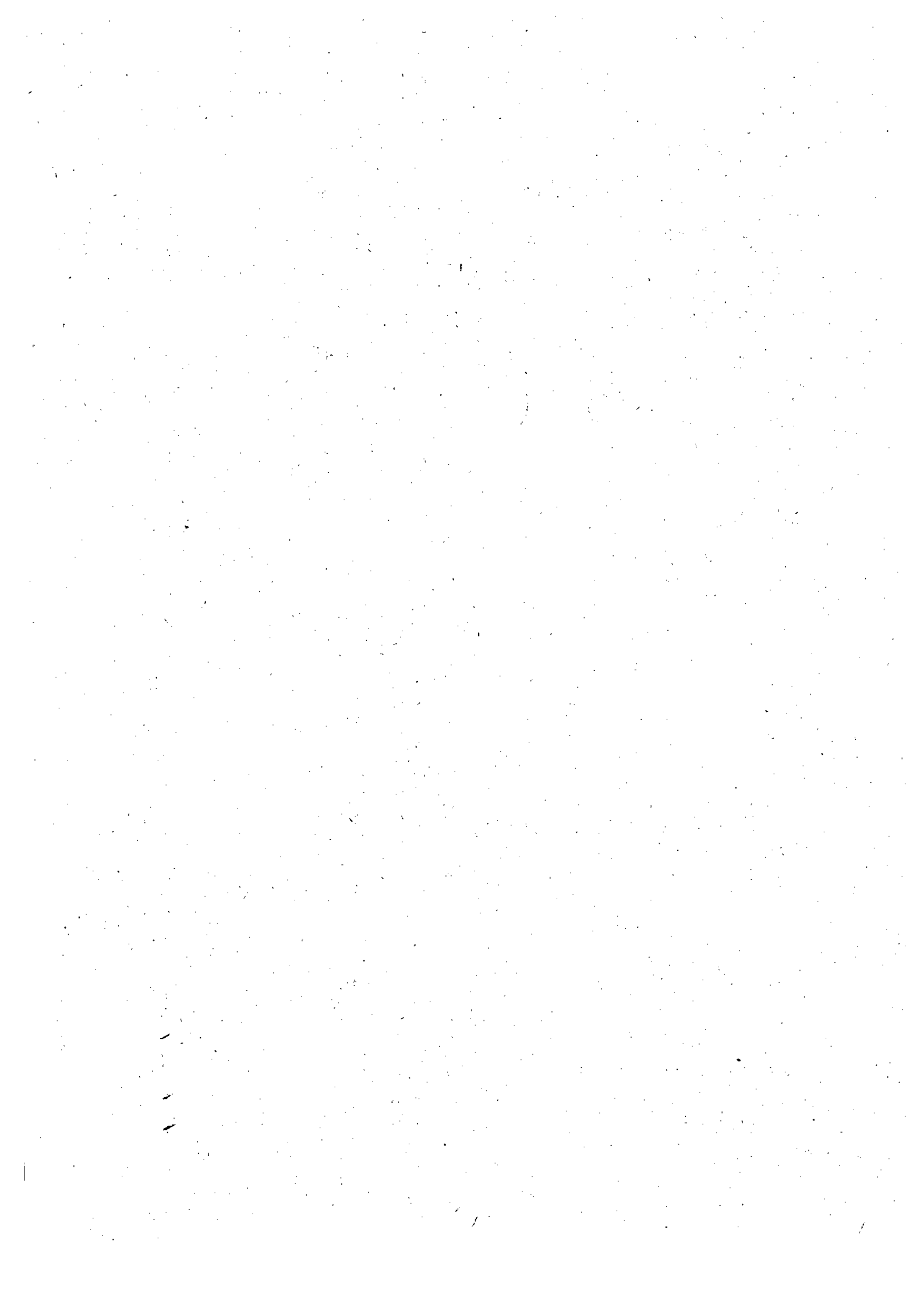
이와 같이 韓半島 周邊 4大國은 모두 韓半島의 分斷을 固定化하는 現狀維持 속에서 그들의 國家 利益을 發見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現狀打破를 원하지 않고 維持를 願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現狀 打破를 結果할 紛爭은 원하지 않으며, 또한 現狀유지를 위해 南北韓의 緊張 緩和를 願하고 있다.

그러므로 4大國은 韓半島의 現狀유지에서 利害關係의 一致性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現狀유지를 追求하는 가운데서 勢力 均衡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는 첫째 韓半島 問題는 4大國의 現狀유지

政策과 關聯하여 풀 어 나가야 하고, 둘째 北傀의 支援 勢力인
中·蘇의 現狀 固定化 政策이 北傀의 現狀 打破 即 武力 南侵
企圖를 抑制하고 나아가서는 好戰的 軍事體制를 解体시키는 役割을
하도록 誘導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으며, 셋째 韓半島 問題를 4
大國의 現狀유지 政策과 一致하는 方向에서, 集團的으로 保障하는
平和의 制度化가 要請된다고 하겠다.



5. 韓國安全保障의 모델 및 評價

가. 모델設立 및 評價의 前提

本章에서는 本 研究의 目的인 韓半島에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며, 同時에 韓國의 安全을 保障할 수 없는 安全保障의 形態를 導出해 내기 위한 모델을 設定하고 그 評價를 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一般的으로 다른 安全保障의 類型에 따라, 韓半島의 環境的 要因인 4大國 政策을 감안하여 設定한다.

그리고 安全保障의 實際에서 본것처럼, 어떠한 境遇에도 國防態勢를 徹底히 해야 하기 때문에 自主國防은 必須的인 것으로, 어떠한 모델에서나 前提가 된다.

또한 一般的 集團安全 保障인 國際聯合은 그 安全保障으로서의 實効性은 이미 본 것 처럼 微弱하지만 汎世界的 機構로서, 國際與論이란 힘이 作用하는 곳이기 때문에, 國際聯合에 名分上으로 依存하는 것은 亦是 어떤 모델에 있어서나 前提가 되는 것이다.

即 國際聯合과의 紐帶를 強化하고 會員國과의 親善 友好關係를 擴大 유지하는 일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모델의 評價에 있어서는, 첫째, 實効性을 검토한다.

왜냐하면 安全保障이란 安全을 保障하는 實効性이 무엇 보다도 重要하며, 實効性이 없으면 아무런 價值가 없기 때문이다.

이 实效性은 一般的으로 다른 安全保障의 實際에 비추어, 그리고 4 大國 政策과 關聯시켜 검토한다.

둘째, 平和定着 志向性を 검토한다.

本 研究가 目的하는 바는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는 것과 同時에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安全保障을 導出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一般論的으로 다른 安全保障의 實際에 비추어, 그리고 4 大國의 政策과 關聯하여 검토한다.

셋째, 實現 可能性을 검토한다.

安全保障이란 哲學이나 思想이 아니며, 實現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現實性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무런 効用이 없는 까닭이다.

나. 個別的 安全保障에 依한 모델 및 評價

(1) 모델 (A)

韓美防衛 條約 (強化)

(가) 構造

現行 韓美防衛條約을 強化하여, 被侵이 있을 때에 憲法節次에 따라 介入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即刻 介入하는 內容으로 修正하는 것이다.

(나) 評價

① 有効性

安全保障의 形態 중에서 가장 古典的이고 基本的인 形態

로서, 個別的 安全保障을 同盟体制의 方法으로 強化한 形態이다.

그러므로 一般論으로 다분 安全保障의 實際에서 보아 온 것처럼 短期的인 觀點에서 볼 때, 그 有効性を 保障하는 것이지만 長期的인 觀點에서 볼 때는 勢力均衡의 原理에 따라 軍備競争등 緊張이 造成되고, 相對편의 軍備를 비롯한 国力의 評價에 있어서 誤判을 하기 쉽고, 따라서 戰爭으로 發展할 可能性이 있어 安全保障의 不安한 要因이 있다고 하겠다.

現實적으로 검토해 보면 韓國은 徹底한 自主 國防態勢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越南의 경우처럼 北傀가 단만히 넘나 볼 수 없게끔 해나가고, 自由世界의 總帥이며 世界 超 強大國인 美國이 韓國安保를 自國의 國家利益에 必須 不可欠의 것으로 確認하고 制度化하여, 核雨傘을 비롯하여 強力한 軍事力으로 뒷받침 할 때 北傀는 南侵의 機會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北傀도 또한 軍事力 強化에 總力を 경주하게 될 것이며 中共 또는 蘇聯과 密着하여 防衛條約을 強化하고 同盟体制를 더욱 強化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積極적인 決意로 北傀의 单独 南侵은 不可能할 것이며, 中共과 소련도 現狀 維持 政策을 追求하고 있으며, 또한 國境紛爭 등을 고려하여 大戰을 覺悟하면서까지 北傀의 南侵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相當한 期間 國際情勢에 特別한 變化가 없는 限 韓國 安保는 保障된다 할 것이다.

② 平和定着 志向性

同盟体制에 依한 個別的 安全保障의 強化는 緊張을 造成하는 屬性이 있기 때문에 平和志向性은 原則적으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韓美防衛條約의 強化는 두말할것 없이 北傀를 刺戟하여 그 特有의 好戰性이 더욱 露出될 것이며, 따라서 反美的 反韓的 敵對關係를 強化해 나갈것이다.

또한 現狀的維持를 追求하는 中共과 蘇聯도 韓美防衛條約의 強化에 依한 韓國의 戰力 強化는 現狀打破의 憂慮가 있는 것으로 보고 對北傀 支援을 強化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南北關係는 相當期間 緊張이 高潮될 것이다.

그러나, 끝없는 緊張의 高潮는 戰爭으로 發展하지 않으면 緊張緩和를 위한 努力이 있기 마련이다. 그 努力이 成功할런지 失敗할런지는 予測하기 어렵지만 一般論에서 보아 온 것처럼 成功의 確率は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힘을 뒷받침한 緊張緩和를 위한 試圖는 해 볼만 한 일이다. 나토와 와루샤와의 경우처럼.

③ 可能性

韓美防衛條約의 改正 強化는 거의 不可能할 것으로 展望된다. 닉슨 독트린에 依한, 亞細亞는 亞細亞人으로 라는, 政策은 이미 보아 온것 처럼 美國의 直接 介入을 強化하는 內容으로 改正 強化하는 어떤 措置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中·蘇와 和解를 追求하며 同時に 現状 維持 政策을 追求하는 立場에서 中·蘇를 刺戟하는 일은 避할 것이다. 그리고 現行 防衛條約으로도 現状유지는 可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至今까지 韓國政府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韓美防衛條約은 改正 強化되지 아니했던 것이다. 그러나, 印支事態를 契機로 試圖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綜合評價

北傀의 南侵을 위한 兇狂的인 準備와 그 好戰性으로 보아, 北傀의 南侵을 먼저 沮止하고 볼 必要性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이나, 韓半島 平和 定着이란 観点에서는 最善策이 못 되며, 또한 實現 可能性도 希薄하다는 欠점이 있다. (中上)

(2) 모델(B)

韓美防衛 條約

韓日防衛 條約

(가) 構造

現行 韓美防衛 條約에 依하여 韓美同盟體制를 緊密히 해나 가면서, — 韓美防衛條約의 改正 強化의 경우에도 —

韓日防衛 條約을 締結하여 韓日 同盟體制를 現實化하고 強化해 나가는 것이다.

(나) 評 価

① 實効性

現 韓國의 安保體制에 日本을 公式的으로 密着시켜, 韓國의 被侵이 있을 경우 日本이 即刻 介入함을 國際的으로 認識시킴으로써 重大한 覺悟를 하지 않는 限 韓國에 쉽사리 侵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日·韓의 共同 同盟體制가 이루어지는 結果가 되어, 現體制보다는 安全保障이 強化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一般論에서 본것처럼 韓日間의 새로운 同盟體의 形成은 北僥를 刺戟하게 되고, 中共과 蘇聯도 刺戟하게 되어 軍事力을 強化하고 同盟體制를 強化할 것이다.

또한 中共이나 蘇聯이 共히 韓半島에 日本 勢力이 登場하는 것을 싫어하는 立場이기 때문에 日本勢力의 牽制措置를 強化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短期的인 觀点에서는 有利하나 長期的인 觀点에서는 不安하다 하겠다. 또한 日本은 아직 軍事的인 面에서는 大國

의 役割을 하기에는 準備가 充分치 못하기 때문에, 만약 美國이 日本을 믿고 닉슨 독트린을 加速化시킬 때 相當한 問題點도 있는 것이다.

② 平和定着 志向性

相當한 期間 緊張이 高潮될 것이다. 또한 힘을 背景으로 한 緊張 緩和 措置를 取함에 있어도 큰 效果를 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平和定着의 길인 緊張緩和에 逆作用을 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③ 可能性

日本の 憲法上的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限 그 實現이 어려울 것이다.

日本の 對韓半島 政策에서 본 것처럼 憲法上的 問題로 하여 解決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國際聯合 行動에 參與한다는 條件으로, 海外에 自衛隊를 派遣할 수 있게끔 解釋을 내려 놓고 있기 때문에 國際聯合의 行動이 先行되어야 하는 條件이 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國際聯合憲章上的 節次에 따라 即刻 介入한다는것을 采

件으로 韓日防衛條約을 締結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될 때 그 意義가 크게 減少될 것이다. 5大 常任 理事國의 拒否權이 있기 때문에 中·蘇와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行動을 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日本 憲法이 改正이 되든지 새로운 解釋이 내려져 國際 聯合의 行動이 아니더라도 海外派遣이 가능한 길을 열어 놓은 다음에 그 實現이 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時間이 必要한 것이다.

④ 綜合評價

韓美防衛條約을 改正 強化하지 않은 狀態에서, 韓日 防衛條約을 締結한다는 것은 實効性에 있어서도 그렇게 바람직 하지 못하며 緊張緩和에도 逆作用을 하게 되므로 平和 定着을 위한 安全保障으로서는 妥當하지 않다. 또한 그 實現도 當分間은 어려울 것이다. (中)

다. 中立的 安全保障에 依한 모델 및 評價

(1) 모 델 (A)

韓國 永世中立

(가) 構 造

韓國을 永世中立化하는 것이다. 即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4大國과 함께 國際條約을 締結하여, 韓國은 如何한 國家와도 同盟關係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韓美防衛條約도 自動적으로 廢棄되고 中立을 지키며 또한 4大國도 韓國이 侵略을 받을 때에는 直刻介入하여 侵略을 격퇴한다는 形態를 取하는 것이다.

그리고 國際條約으로 保障하는 完全型中立的 安全保障인 永世中立外에 韓國의 憲法을 改正하여 憲法上의 規定으로, 中立을 宣言하고 4大國의 承認을 받는 오스트리아式的 不完全型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評 價

① 實効性

一般論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中立的 安全保障은 不安定型이다. 永世中立은 오오스트리아처럼 不完全型에 있어도 말할 것도 없고, 스위스처럼 完全型에 있어서도 스위스의 境遇처럼 特殊環境 속에서 어느 程度 期待해 볼 만한 것이지만 實際에 있어서 그것도 問題가 있는것은 이미 보아 온 바이지만 그렇지 않은 狀況에서는 安全保障으로서의 機能은 至極히 不安한 것이다. 周辺 大國들에 依하여 中立이 保障되고 安全이 保障되게끔 되어 있으나

이것은 積極的인 保障이 아니라 消極的인 保障인 것이다.

우리의 境遇, 永世中立이 된다면 北傀는 民族 內部的 問題라는 표방下에 武力 南侵을 企圖할 것이다.

北傀의 南侵이 있을 경우, 中·蘇는 勿論 介入 하지 않을 것이며, -事前에는 견제 하겠지만- 日本은 韓半島가 共產化로 統一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立場이기 때문에 積極性을 가질 것이지만, 憲法上的 問題·軍事力的 問題 또 韓國과의 歷史的 特殊關係 등을 考慮할 때, 많은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美國의 立場도 韓美 防衛條約의 경우보다 消極的이 될 것이며, 또 駐韓 美軍의 撤収가 이루어진 뒤이기 때문에 戰略的인 面에 있어서도 現在보다 不利할 것이다.

② 緊張緩和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緊張 緩和란 觀点에서 볼 때 實質的인 긴장 완화가 안 될 것이다. 北傀의 士氣 양양 등으로 오히려 不安과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③ 可能性

韓國만 積極性을 띠다면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4大國도 願하는 바는 아닌 것이다. 現狀 維持와 駐韓 美軍의 繼續 駐屯을 願하는 立場에서 4大國 政軍의 一致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勢力 均衡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綜合 評價

實効性도 不安全하고, 緊張 緩和도 平和定着的인 方向과는

逆行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따라서 實現 可能性은 어느 雜度
있다 하겠지만, 平和定着을 위한 安全保障의 形態로서는 適當하지
못하다. (下下)

(2) 모 델 (B)

韓國 永世中立

北傀 永世中立

(가) 構 造

南·北韓이 同時에 永世中立化 한다. 韓國이 앞에서 본
것처럼 영세중립화 함과 同時에 같은 方法으로 北傀도 永世中立化
하는 形態이다.

(나) 評 価

① 実効性

韓國만 永世中立化하고 北傀는 永世中立化하지 않는 것보
다는 나을런지 모른다. 왜냐하면 南·北韓이 同時에 永世中立化하
면 南北韓 모두가 外國과의 軍事同盟 關係를 解体해야 하기 때문
이다.

即 韓國도 韓美 防衛條約을 廢棄하고 北傀도 中共 및 蘇聯과의
相互 協力 援助 條約을 破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은 駐韓 美軍이 撤収해야 하는 不利益이 따른다.
그러므로 現在의 境遇보다도 実効성이 弱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앞서서도 拳論된 것 처럼 永世中立에 있어서의 條約國 保障

이런 消極的인 것이다. 一般論에서 본 것 처럼 中立的 安全 保障이란 至極히 不安한 形態인 것이다.

이런 境遇, 韓國이 核武裝을 하고, 軍事力에 있어서 越等하게 強力할 때에는 相當한 實効性이 있다고 보겠으나, 이것도 一般論에서 본 것 처럼 相對的인 것이다.

② 平和 定着 志向性

南北韓의 軍事力이 均衡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相當한 緊張 緩和가 있을 것이다. 또한 韓國과 北傀는 4大國과 모두 國交 正常化를 하게 될 것이고 大使 交換 등 相當한 交流가 있게 될 것이 豫想되므로 北傀의 好戰性도 相當히 中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傀가 對南 武力 赤化 企圖를 포기하지 않는 限이 緊張 緩和의 期間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③ 可能性

韓國이 積極性을 가질 때, 可能할 수도 있을 것이다.

4大國의 韓半島 現狀 維持 政策에 依한 分斷의 固定化란 立場에서 본다면 그렇게 反對할 理由가 없다. 그러나 駐韓 美軍의 撤収로부터 생길 힘의 空白은 4大國 모두가 願하지 않는다. 勿論 理由는 이미 본 것 처럼 同床異夢格으로 모두 다르지만 그러나, 그 願하지 않는 強度로 볼 때에 韓國이 積極性을 가지고 美國과 日本을 說得하고, 美國과 日本이 中共과 蘇聯을 說得하고 그리고 中共과 蘇聯이 北傀를 說得할 경우 그 實現은 可能할 것이다.

④ 綜合 評價

實効的인 面에서 現在의 韓國 安全保障의 形態보다 不利하다. 多少 緊張 緩和를 가져올 可能性은 있다 하더라도 國家의 安保를 優先해야 하는 立場에서는 바람직한 形態로는 되지 못하며, 實現 可能性에 있어서는 큰 問題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追求하는 形態로는 適切치 못하다. (下)

(3) 모 델 (c)

韓國 非同盟 中立路線

(가) 構 造

韓國은 非同盟 中立路線을 挾하여 모든 國家와의 同盟 關係를 맺지 아니하고 또한 敵對 關係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韓美防衛 條約은 廢棄되고 모든 國家와 親善 關係를 갖게 된다.

이것은 어떤 條約上으로 하는 것이 아닌 韓國 政府의 對外 政策으로 實施하게 되는 것이다.

(나) 評 價

① 實効性

이 中立路線에 依한 安全保障은 實際로 韓美防衛 條約을 廢棄하는 結果만 招來하게 되고 아무런 所得도 없는 것이다.

韓國이 統一을 이룩한 뒤에는 스웨덴처럼 해 볼만도 하다 하겠으나, 그런 경우에도 亞細亞的인 後進 地域이란 點을 考慮한다면 到底히 우리의 경우에는 妥當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② 平和定着 志向性

北傀와의 데땅뜨는 힘의 뒷받침이 없는 限 어려운 것이다.
好戰性을 滿足시키는 結果밖에는 더 되지 못할 것이다.

北傀의 和·戰 兩面의 戰略 戰術만을 自由 自在로 구사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되는 緊張 緩和만이 있게 될 것이다.

③ 可能性

可能性은 있다. 韓國의 独自の 政策 路線으로 決定하면
되기 때문이다. 勿論 美·日과 事前 諒解로 合意를 보아야 할 것
이나, 美·日도 願하는 바는 아닌 것이다.

④ 綜合 評價

實効性에 있어서나 平和定着 志向性에 있어서나 不適合하다.
(下下)

(4) 모 델 (C)

韓國 非同盟 中立路線

北傀 非同盟 中立路線

(가) 構 造

韓國도 非同盟 中立路線을 取하고, 北傀도 非同盟 中立路線을
取하는 形態이다.

(나) 評 價

① 實効性

南北韓이 모두 永世中立化하는 경우보다 實効性이 못하다.
그러나 韓國 单独 非同盟 中立路線을 取하는 경우 보다는 多少 낮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도 韓美 防衛 條約을 廢棄하고, 北傀도 中共 및 蘇聯과 맺은 相互 協力 援助 條約을 廢棄한다. 그러나 永世中立의 경우처럼 國際的 保障-消極的인 것이기는 하나-措置가 없이 外交的 力量에 依托하는 安全保障이기 때문에 그 實効性이 微弱한 것이다.

중立的 安全保障이란 一般論에서 검토된 것처럼 事實上 安全保障 裝置로서는 정말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우기 駐韓 美軍이 撤収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韓國이 北傀보다 훨씬 不利益한 것이다. 現在의 韓美防衛條約에 依한 安全保障에 比해 越等히 못한 形態이다.

② 平和定着 志向性

南北韓의 軍事力이 均衡을 이루고 있거나 韓國이 월등히 強한 狀態가 되어 있을 때에는 相當한 緊張 緩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地政學的으로 보나 北傀의 性格으로 보아 一時的인 現象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北傀의 策勳이 있게 될 것이다.

③ 可能性

韓國이 積極性을 가지고 推進하면 不可能한 것도 아닐 것이다. 4大國의 政策으로 보아, 分斷 固定化로 現狀 유지를 追求하는 政策과 背馳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의 空白狀態가 招來될 때에 그 空白을 美國 以外の 國家가 메꾸는 것을 서로 두려워 하여 주저할 可能性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駐韓美軍의 계속 駐屯을 모두 바라는 立場에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北傀는 駐韓美軍의 撤収라는 橫財를 하게 되고, 소위 그들의 自主路線과 民族 內部 問題化할 수 있는 可能性 등을 고려하여 贊同할 것으로 展望된다.

④ 綜合 評價

緊張 緩和에는 多少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安全保障이란 側面을 重視해야 하는 立場에서 본다면 適切치 못하다.

實現 可能性에 있어선 期待할 수 있다 하겠으나 實効성이 微約할 때에 그 可能性은 價值가 없는 것이다.(下)

라. 集團的 安全保障에 依한 모델 및 評價

(1) 모델 (A)

東北亞 集團安全保障

(가) 構 造

韓半島에 利害 關係를 가지고 있는 周辺 4大國인 美·蘇中·日과 南北韓이 當事國이 되어 東北亞 集團安全 保障 條約을 締結한다.

그 內容은 條約 當事國間에 不可侵과 相互 友好 防衛同盟 關係를 締結하여 어느 一方이 他方을 攻擊하였을 때에는 條約 當事國이 集團으로 侵略 攀退를 위해, 即刻 介入하며 武力行動을 取하는 것이다.

(나) 評 価

① 実効性

이 形態의 実効性도 亦是 韓國의 安全保障이란 立場에서 따져 보아야 한다.

韓國은 모든 條約 當事國과 不可侵 條約을 맺게 되는 結果가 되고, 동시에 모든 條約 當事國과 防衛同盟을 맺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美防衛同盟은 事實上 解体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即刻적으로 介入 하계끔 改正 強化하는 內容이 될 것이다.

또 駐韓 美軍의 계속 駐屯 問題는 永世中立이나 中立路線의 경우 처럼 撤収해야 할 理由가 없으며, 駐韓 美軍의 駐屯 問題같은 것은 當事國間의 問題로 解決할 수가 있을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도 4大國이 모두 駐韓 美軍을 繼續 주둔해 주기를 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둔이 可能할 것이다.

이런 경우, 4大國이 모두 韓半島에서 論争이 일어나는 것을 願하지 않기 때문에 相當한 実効性이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北傀의 南侵이 相當히 抑制될 것이고 南侵이 있을 경우에도 中·蘇는 介入해 주기를 期待할 수 없으나, 美國과 日本은 最善을 다해 侵略 遂退에 努力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問題가 있는 것은 이 東北亞 集團 安全保障이 成立되었을 경우, 中·蘇는 國境 現狀 유지를, 合意한 結果가 되므로 中·蘇 和解의 可能性이 있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中·蘇 紛争이

現在의 韓半島 現狀 유지와 努力均衡에 重要 關鍵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相當한 變化가 招來될 것이다.

또한 그 變更은 韓國에 不利한 方向으로 轉換될 것이다. 現在에는 中·蘇 紛爭때문에 駐韓 美軍을 中·蘇·共히 바라고 있는 形便이며, 北傀의 南侵을 견제하고 있음을 理解할 때에 豫測하지 못한 不利한 結果가 招來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實効性에 있어서는 相當한 疑問이 있는 것이다.

② 平和定着 志向性

相當한 緊張 緩和가 이루어질 것이다. 4大國이 모두 韓半島의 現狀 維持와 緊張 緩和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政策과 一致하는 것으로 그들의 義務를 充分히 履行하여 韓半島 平和 保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北傀도 美國과 日本과도 國交正常化를 해야 하기 때문에, 平壤 거리에 自由세계의 바람이 불어 갈 때에 그 好戰性을 계속 高潮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中·蘇 데탕트가 이루어질 可能性이 있는 形態이기 때문에, 勢力均衡上의 變化를 招來할 可能性이 있고, 그로 因한 南北間의 새로운 緊張을 誘發할 憂慮가 있을 것이다.

③ 可能性

美國과 日本은 消極的인 立場에 설 것이다. 그러나, 積極的인 反對는 안 할 것이다. 中·蘇 國境 紛爭으로 因한 戰爭의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願치 않으므로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中蘇戰爭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國家利益에 有利할 때에만 介入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介入하지 않을 생각으로 參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蘇聯은 中·蘇 國境의 現狀 固定化를 願하기 때문에 積極 參與할 것이다.

中共은 國境 變更을 主張하기 때문에 國境 問題의 妥協이 없는 限 絶對 參與하지 않을 것이다. 北傀도 南北韓의 現狀유지를 願하지 않기 때문에 中共과 함께 反對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中·蘇 國境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限 實現 可能性은 稀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綜合 評價

實効성과 緊張 緩和에 有益한 可能性이 많다. 中·蘇 데탕트의 可能性이 있는 問題점이 있어, 不安한 要素가 內包되어 있다고 보아 滿足스러운 形態는 못된다.

또 可能性도 稀薄한 欠점이 있다. (中下)

(2) 모델 (B)

韓半島 集團平和安全保障

(가) 構 造

韓半島의 有關 4大國인 美國·蘇聯·中共·日本과 韓國·北傀가 條約 當事國이 되어,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를 集團的으로 保障하는 形態이다.

即 條約國은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났을 경우에 모두 即刻 介入하여 集團的으로 侵略者를 擊退하고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과 北傀는 모든 當事國과 親善 不可侵 條約을 맺어 友好 協力 關係를 가지게 되는 內容이 되는 것이다. 勿論 南北韓도 서로 親善 不可侵 條約을 맺게 되는 內容도 包含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南北韓은 各各 4大國과 共同 防衛條約을 맺는 內容도 包含되는 것이다. 이 共同 防衛 條約의 內容은 韓國에 共同 武力介入으로 即刻 그 侵入을 擊退하는 것이 될 것이다.

駐韓美軍의 駐屯 問題는 當事國間의 問題로 解決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 駐屯할 수가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即 韓半島에 있어서 條約國의 軍隊 駐屯 問題는 當事國間의 合意로 可能하다는 條項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永世中立이나 中立路線의 경우와는 달리 外國軍 駐屯 問題는 可能한 것이다.

(나) 評 價

① 實効性

實効性은 相當할 것이다. 現行 韓美防衛條約에 依한 安全保障보다 오히려 나을 수가 있을 것이다.

一般論에서 보아 온 밖과 같이 防衛同盟만의 경우 即 軍備 등의 過乘 競爭이 어느 程度 緩和될 것이고, 또 現狀維持를 願하고

따라서 紛爭을 바라지 않는 中共과 蘇聯을 北傀의 挑発 卽 現狀 打破 企圖를 견제하는 役割을 하게끔 誘導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駐韓 美軍의 계속 주둔은 4大國이 모두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둔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韓半島에서 戰爭이 발생했을 때에 卽刻 介入하게끔 해 놓기 때문에 오히려 韓美防衛 條約을 改正 強化하는 結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韓國은 中·蘇와 等距離外交를 할 수 있는 契機가 되기 때문에 北傀를 牽制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協力者를 새로이 얻게 되는 利益이 있을 것이다.

② 平和定着 志向性

相當한 緊張 緩和가 있을 것이다. 지금 敵對 關係에 있던 國家를 包含한 4大國과의 友好 親善 關係의 成立으로 韓半島에는 새로운 平和 무드가 造成될 것이다. 北韓 땅에 美·日을 비롯한 自由諸國의 公館이 서게 되고, 文化 등 交流가 있게 될 때에 北傀의 好戰性은 漸次 中和되어 갈 것이다.

北傀 또한 그들의 安保가 確實하게 保障되기 때문에 漸次 부드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平和定着에 相當한 도움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③ 可能性

實現可能性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韓國이 積極的일 때에 周邊 4大國은 모두 贊成할 것이다. 그들의 政策과 一致하기 때문이다.

單只 北傀가 反對할 것이다. 駐韓美軍의 撤収를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中·蘇가 積極的인 影響力을 行使할 때에 北傀도 對南 赤
赤化 企圖만 어렵게 된 것이지 實質的으로 損害를 입은 없기 때
문에 順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說得의 時間은 相當히
必要할 것이다.

④ 綜合 評價

實効性에서나, 平和定着 志向性에 있어서나, 또 實現 可能
性에 있어서 바람직한 形態라 할 것이다.

그러나, 一般論에서 보아 왔듯이 完全한 安全保障이란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이 形態도 相對的인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政
策化할 可能性은 있다. (上)

(3) 모델 (C)

東北亞 集團防衛條約

(가) 構 造

韓國·美國·日本이 NATO型으로, 集團 防衛同盟을 形成하여,
어느 한편이 侵入을 받을 때에는 他 當事國이 自國에 對한 侵入
으로 보고 即刻 武力 介入하여 侵入을 擊退하고 安全을 保障하는
形態이다.

(나) 評 價

① 實効性

韓國의 安全保障은 相當히 強力한 뒷받침이 된다고 하겠
다.

美國과 日本이 韓國의 防衛同盟國으로서 強力하게 뒷받침 하기 때문에, 美國과 日本 特別히 美國과의 決戰을 覺悟하지 않는 限 北傀의 南侵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一般論에서 본 것처럼 東北亞에서 韓·美·日에 의한 NATO型의 強力한 同盟體가 確立되면 北傀는 勿論 中共과 蘇聯을 자극하게 되어 이에 対応한 어떤 同盟體制를 形成하게 될 것이다. 中·蘇 對立 關係로 因하여 瓦르샤와條約 같은 것은 이룩할 수 없다고 하면 中共과 北傀, 蘇聯과 北傀 間의 同盟體制를 強化하고 北傀에 軍事支援을 增大할 것이다.

그리하여 同盟體制間의 激甚한 對立을 誘發하고 安全保障을 不安케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超大國間의 對立이기 때문에 世界大戰을 覺悟하지 않는 限 戰爭으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② 平和定着 志向性

相當한 期間동안 緊張이 高潮될 것이다. 南北 關係는 相當한 期間동안 팽팽히 맞서 좀처럼 妥協되지 않을 것이다. 또 北傀의 好戰性으로 보아 強力한 背景과 支援을 받고 갖가지 策動을 다 할 것이다.

② 可能性

可能性은 稀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에서 緊張을 願하지 않는 美國과 日本이고 보면 좀처럼 弛하지 않을 것이다. 日本은 憲法上의 問題도 解決해야 하는 難題도 있다.

④ 綜合 評價

実効性은 있다고 보겠으나 平和定着性에 있어서는 不適當이
이며 可能性도 疑問視된다. 따라서 適切하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中)

6. 結 論

至今까지 韓半島에 平和定着을 가져 올 수 있는 韓國 安全保障의 形態를 導出해 내고자 研究했다.

먼저 安全保障의 一般論을 形態에 重點을 두고 歷史的 經驗的 方法으로 研究 했다.

即 安全保障의 類型을 검토하고 그 다음 그 類型에 따른 各 形態들의 實際를 검토하여 그 實効性和 特性을 把握 했다.

安全保障의 類型으로서 個別的 安全保障, 中立的 安全保障, 集團의 安全保障 등이 있다. 이것을 더욱 具體적으로 보면 個別的 安全保障은 单独的인 것과 同盟體制를 갖는 것이 있고, 中立的 安全保障은 永世中立과 中立路線이 있고 永世中立은 完全型(스위스型)과 不完全型(오지라型)이 있다. 集團의 安全保障은 一般的 集團安全保障과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이 있다. 또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은 集集中型(完全型)과 集團防衛型(不完全型)이 있다.

이와 같은 諸 形態들의 實際 即 實効性和 特性은 다음과 같다.

個別的 安全保障은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實効性은 있으나 長期的으로 볼 때에 軍備 競爭 등으로 不安全하며 緊張이 造成되는 欠點이 있다. 中立的 安全保障은 어떤 形態에 있거나 스위스 처럼 至極히 特殊 狀況에서나 어느 程度 생각 할 수 있으나 그 實効性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集團의 安全保障은 集團의 努力으로 平和를 保障한다는 理想은

가지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卽 一般的 集團安全保障은 汎世界的 기구로서 國際 協力과 友好 增進에 많은 도움은 되지마는, 安全保障이란 側面에서는 거의 無能에 가깝다.

地域的 集團 安全保障중 集中型(完全型)은 緊張을 緩和하는 長點은 있으나 亦是 限界性이 있고, 防衛型(不完全型)은 舊 同盟體制的 性格으로 防衛同盟과는, 非軍事的 側面이 있고 參加國 數가 조금 많다는 差異點뿐이다.

이렇게 볼 때에 安全保障의 形態는 完全 無欠한 것은 없고 모두 長·短點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一般論에서 다른 結論에 따라 韓國 安全 保障의 形態를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는 國際的 環境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韓半島 問題는 國際政治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至今까지 國際政治가 環境的 要因으로 깊이 關係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半島를 둘러싸고 作用하고 있는 環境的 要因으로서의 國際政治 卽 有関 4大國의 政策을 검토 했다.

그리하여 韓半島에 갖고 있는 그들의 國家利益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追求하는 政策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韓半島 問題에 어떻게 作用하고 있으며 어떤 影響을 주고 있는지 검토 했다.

4大國 모두가 韓半島의 分斷 固定化와 그것을 위한 現狀 維持를 願하고, 이 現狀 維持속에서 勢力均衡을 取하고 있다. 그리고

勢力均衡下에서 그들의 國家利益을 追求하고 있다.

勿論 이것은 政治 經濟 軍事 面에서 各各 同床 異夢 格이기는 하나 外形的인 現象은 同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韓國의 平和 統一 政策과는 우연히도 最少限 背馳되 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4大國 政策과 關聯하여 그리고 이를 우리편으로 利用 하면서 問題를 풀이 나가기가 꽤 편리하다는 事實도 알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本 研究에서 追求하는 平和定着 即 韓半島에서 戰爭을 抑制하고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 統一 志向的인 安全保障의 形態를 導出하기 위한 模型을 設定 해 보았다.

이 모델은 一般論에서 검토한 安全保障의 諸 形態를 韓國의 경우에 適用하여 設定 했다. 勿論 이 모델의 設定에도 環境的 要因을 考慮했다.

이들 모델은 個別的 安全保障에 依한 것이 韓美防衛條約(強化) 韓美防衛條約·韓日防衛條約이다.

中立的 安全保障에 依한 것이 韓國永世中立, 韓國永世中立·北傀永世中立과 韓國非同盟 中立路線, 韓國 非同盟 中立路線·北傀 非同盟 中立路線이다.

集團的 安全保障에 依한 것으로는 一般的 集團安全保障 即 國際 聯合은 實効性은 없으나 國際 與論이란 側面에서는 價值性이 있기 때문에, 自主國防과 함께 모든 모델의 前提로 해 둔다.

地域的 集團安全保障에 依한 것으로는 集中型으로 東北亞 集團安全保障, 韓半島 集團平和安全保障이고, 集團防衛型으로 東北亞 集團防衛同盟이다.

이와 같이 設定된 諸 모델을 4大國 政策과 一般論에서 다른 安全保障의 實際와 關聯하여, 實効性 平和定着志向性 可能性 등을 中心으로 綜合 評價하여 보았다.

그 結果 바람직한것은 韓半島 集團平和安全保障이고, 그 다음이 韓美防衛條約(強化)로 評價 되었다.

그러므로 結論적으로 볼 때에 韓半島에 平和定着을 가져올 수 있는 韓國 安全保障의 形態로서는 첫째, 自主國防에 依한 國防力을 徹底히 培養하고, 둘째, 國際聯合과의 關係를 強化하여 國際輿論이란 힘을 有利하게 誘導하면서, 셋째 韓半島 有關 4大國 即 美·蘇·中·日과 韓國 北傀가 參加하는 韓半島 集團平和安全保障 條約을 締結하여, 中·蘇를 北傀에 對한 牽制 勢力으로 強化시켜, 利用하고 美國과 實質적으로 防衛同盟關係를 強化하고(自動介入) 日本을 韓國에 더욱 密着시키면서 北傀를 牽制하는 것이다.

또한 平壤을 비롯한 北韓 地域에 美國과 日本을 비롯하여 自由 諸國의 公館등을 設置하고 따라서 自由世界의 文化를 불어 넣어 北傀의 好戰性을 中和하고 戰爭 體制를 解体시키는 方向으로 誘導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이 韓半島 集團平和安全保障 體制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北傀를 說得해야 하므로, 時間을 가지고 直接 또는 間接으로 諸般 努力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駐韓 美軍은 계속 駐屯하는 方向에서 問題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韓半島 集團平和安全保障으로 可能한 것이다.

韓國은 經濟力에 있어 越等히 앞서 가기 때문에 大胆하게 이 政策을 推進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 具體的인 方法과 時期 問題는 다시 細部的으로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